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복지 서비스와 민간의 역할
손원익

현안분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권성오

정책토론티포트

제14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6년 과세 연도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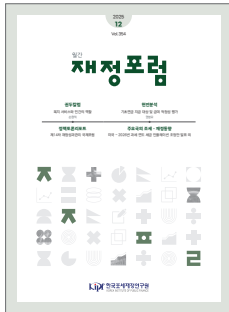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12월 19일 발행

통권 제35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복지 서비스와 민간의 역할
손원익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현안분석

10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책토론포럼

28

제14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2

미국 - 2026년 과세 연도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복지 서비스와 민간의 역할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wson2001@gmail.com

복지 서비스와 민간의 역할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생산인구의 감소,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린 복합적 구조적 압박(Structural Pressure)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은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공 재정만으로는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질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정압박 속에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의 민간 참여영역 확장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의 중심에는 비영리 섹터가 있다.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정부나 시장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탁월한 비교우위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 자원(기부, 자원봉사) 연계라는 독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비영리 섹터가 복지 분야의 주요 축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비영리 섹터의
잠재력을 복지 분야
민간 역할의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 관계를
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지원 구조 개편

정책 방향의 핵심은 비영리기관을 단순 재정 보조자(Subsidy Provider)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로 인식하고,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비영리 섹터의 잠재력을 복지 분야 민간 역할의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 관계를 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Cooperative and Horizontal Governance) 체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위탁 계약 구조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영리기관의 인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혁신 투자 역량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전문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성과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현금급여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형태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비영리기관이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지 재정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투자 및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비영리기관이 참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제도의 적용 범위를 다각화하고 초기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등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한, 복지 분야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을 통해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 펀드를 정부 주도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초기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기관 역시 자선(Charity)을 넘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통해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재원 유치 및 비영리 섹터의 자립 기반 강화

복지지출의 국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는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가장 핵심적인 민간의 역할 분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 인센티브를 한층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기관(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연된 주식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 역시 합리적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기관과 기업 간의 전략적 사회공헌(CSR)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 기부금의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고유목적 연계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공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기관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연의 고유목적과 연계된 수익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하고, 수익금의 공익 목적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기관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 및 물품 구매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고유목적 연계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공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은 한국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은 복지 후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공공의 책임성을 핵심 축으로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

정부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과거의 위탁 및
규제 중심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비영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노력과 비영리 섹터의 자원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복지 공급 모델(Innovative Welfare Delivery Model)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영리 섹터를 활용한 민간 역할의 확대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연대 강화 등 다양하고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과거의 위탁 및 규제 중심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비영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안정적인 파트너십, 성과 기반의 자율성 부여, 강력한 기부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통해 비영리 섹터의 역량을 국가 복지 시스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민간 기부를 최대한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비영리기관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규정도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높아진 복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sokwon@kipf.re.kr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공공사회지출¹⁾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90년 2.6%에서 2022년 14.8%로 증가하였다.²⁾ 공공사회지출 증가의 동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 지출의 확대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기여형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의 약 5.6%를 차지하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³⁾ 2014년 6.9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5년 27조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기초연금 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제도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2025년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역시 2014년 87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동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 제약 속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장기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1) 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반정부지출 및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등 사회보험 지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을 포함

2) KOSIS, 공공사회복지 지출 통계

3)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은 337.4조원이며, 기초연금 지출은 18.9조원

4)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2023.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2008년 이후 목표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70%로 고정되어 있으나, 변화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윤석명 외, 2011; 최성은, 2024). 또한 현행 제도의 보편적 지급 방식이 과연 노인 빈곤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류재린, 2022; 이승희, 2023).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현행 70% 목표수급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둘째, 소득 수준별 노후소득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차등화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본고는 기초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부부 감액제도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I 기초연금 개요

1. 제도 개요⁵⁾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기초연금 수급 대상⁷⁾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0.7을 곱한 후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후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제도 및 정책 현황은 2025년 기준이다.

6) 「기초연금법」 제1장 제1조

7)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 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유족일시금 등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이다.

기초연금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표되는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의 월 최대지급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된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0%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중 큰 금액이 기초연금 급여로 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을 적용받게 되며, (기준연금액 - 2/3×A급여) 값이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되어 부가연금액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표 1 기초연금 수급자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구분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 2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Min(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산정 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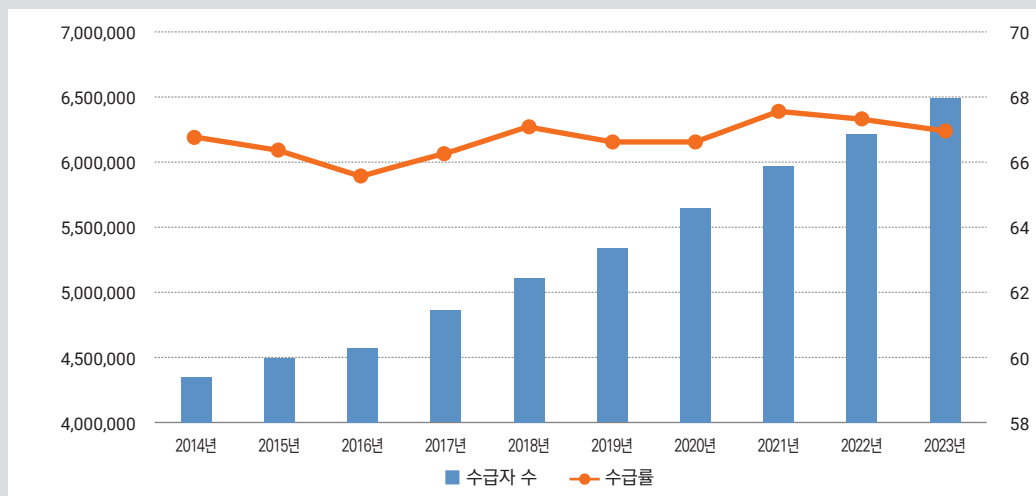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된다. 2022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이었으며, 이 중 8만 9천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62만 1천명은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전액 삭감되었다(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2. 제도 현황

기초연금 지출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4년 약 6.9조원에서 2023년 약 22.5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이 70%로 유지됨에 따라 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14년 월 20만원에서 2023년 월 32만 3천원으로 약 1.6배 인상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고령 인구의 구조적 증대와 급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지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기초연금 연도별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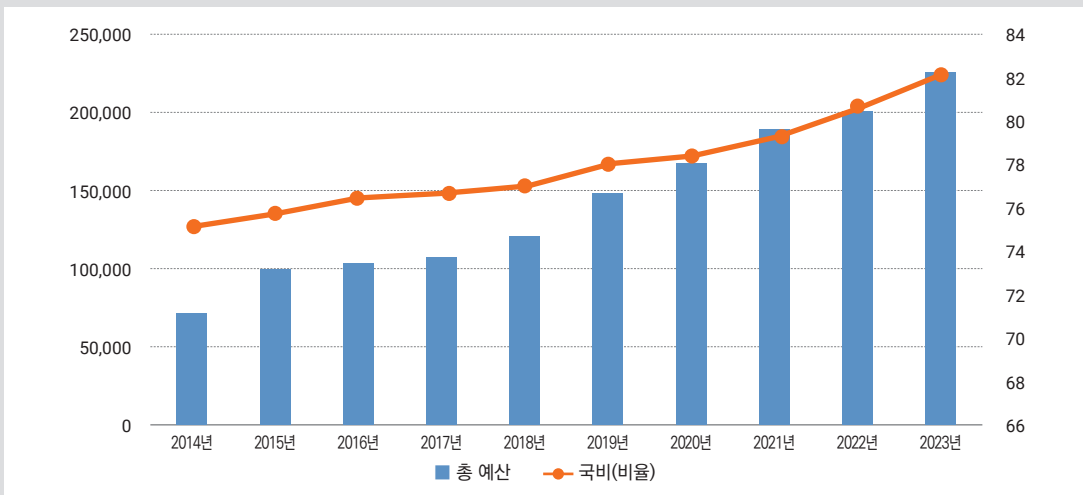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그림 2 기초연금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재정지출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2014년 75:25에서 2023년 82:18로 변화하며 국비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모두 80%를 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70%에서 9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율 70%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체의 5%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90%를 지원받는 지자체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연금 재원 국가 차등보조 기준

구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지원	50% 지원	60% 지원
	80% 이상~90% 미만	50% 지원	60% 지원	70% 지원
	80% 미만	70% 지원	80% 지원	90%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공적연금 수급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와 비교하여 노인층의 연금 보장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Ⅲ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평가는 제도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노인빈곤율 감소 등 노인빈곤 완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1.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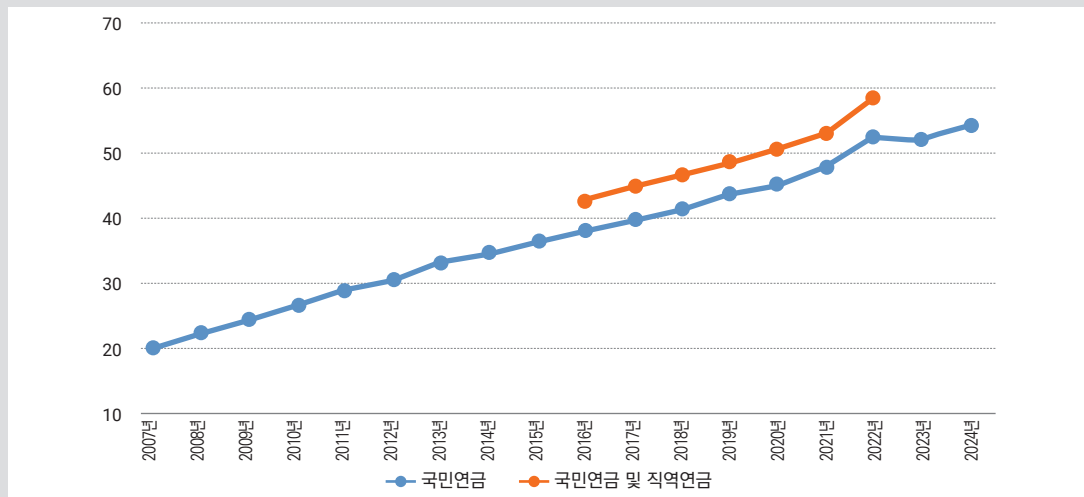
현행 목표수급률 70%는 2008년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당시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이다(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되었던 공적연금 수급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지급 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적연금 수급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에 대한 통계는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제약이 있어, 여기서는 먼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크게 증가하였다.⁸⁾ 국민연금 수급률이 도입 당시보다 34.6%p 증가한 현시점에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수급률을 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비율이 2016년 42.9%에서 2022년 58.5%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비중도 2014년 30.4%에서 2023년 4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적연금 수급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와 비교하여 노인층의 연금 보장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8) 이와 함께 평균수급액 역시 명목 기준으로 2008년 32만원에서 2025년 67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만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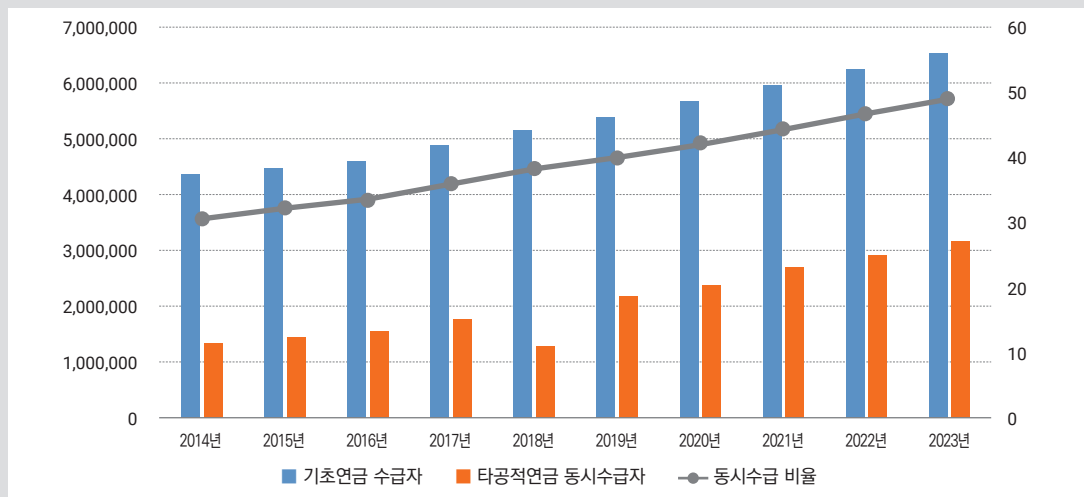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각 연도

그림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동시수급 현황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감소하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노인빈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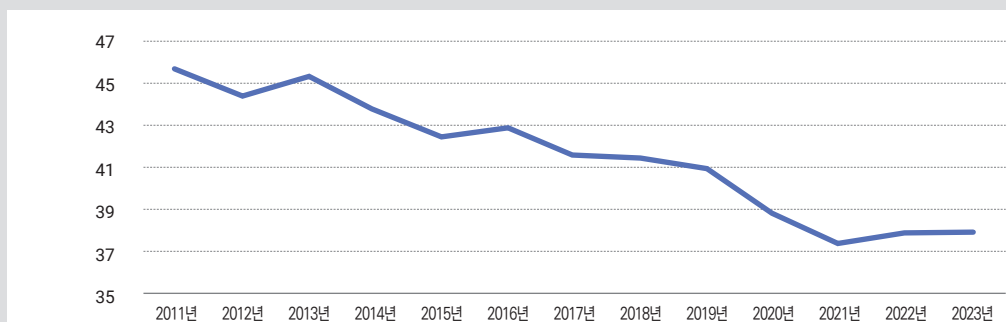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도입 및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예컨대 기초연금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가 노인 빈곤 완화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노인 상대빈곤율을 언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기초노령연금에 앞서 시행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소득지원 제도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 제도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추가되는 형태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1인당 월 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1997년에는 최대 월 5만원까지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노령수당을 확대·개편한 경로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약 8.3%p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추세는 안서연·최광성(2022), 류재린(2024) 등 최근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 노인빈곤율 추세

(단위: %)



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이하에서는 소득분위별 생활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4년과 2024년 미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⁹⁾ 분석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로, 경상소득 기준 10분위로 구분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과 함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노인 단독가구의 실질 소득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한 월평균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는 19만원에서 51만원으로, 5분위는 5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분위는 266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저소득 분위의 실질소득 증가는 사적 소득 증가와 함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3년 월 9.7만원에서 2023년 월 32.3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는 약 47만원에서 6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으로 약 1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월 1,038,946원을 빈곤선으로 정의할 경우, 5분위 이하에서는 평균 경상소득이 여전히 빈곤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로, 당시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월 812,416원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 7분위 이하에서 평균 경상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의 경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층까지 수급자로 포함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93% 수준으로 상승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김도현·이승희, 2025). 이는 수급 대상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고령층의 경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층까지 수급자로 포함되고 있다.

9) 각각 2013년과 2023년의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3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분포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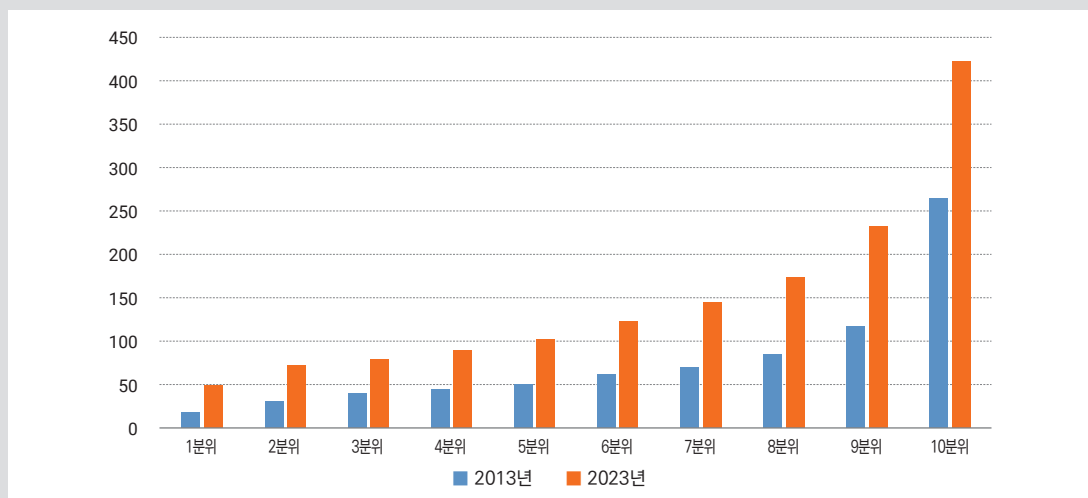
분위	2013년			2023년		
	평균	최솟값	최댓값	평균	최솟값	최댓값
1	18.65	0.00	26.59	50.79	0.00	63.92
2	31.47	26.69	35.49	70.31	64.00	75.83
3	38.74	35.59	42.99	80.43	75.92	84.67
4	46.33	43.09	48.19	90.69	84.75	96.33
5	52.34	48.39	55.99	103.79	96.67	111.75
6	59.83	56.09	63.59	121.70	111.92	132.42
7	68.66	63.69	71.99	143.86	132.50	156.83
8	83.45	72.49	95.28	175.67	156.92	195.67
9	115.84	95.48	139.97	231.88	196.08	275.33
10	265.90	140.17	1,199.76	423.78	275.42	2,657.17

주 경상소득은 2023년 기준 실질소득이며, 기초연금을 포함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분포 변화

(단위: 만원)



주 경상소득은 2023년 기준 실질소득이며, 기초연금을 포함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IV 기초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성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의 제도 목적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 비용과 노후소득 재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개별 노인의 생활 여건을 모두 반영한 생활비 산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노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 간 노후소득 격차가 크다면 기초연금 급여 차별화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액 산정 방식은 해외의 비기여형 연금 및 노인 지원 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핀란드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영국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등은 저연금·저소득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최저 연금 및 소득 수준과 실제 연금 및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기본 생활비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 증가율, 경제 상황, 가구 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해 정부가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고시하는 정책적 기준값으로,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월 120만원 수준이다. 한편 최저생계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3년마다 계속 계측되고 있으며,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1만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활용하여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등 11개 비목별로 시장 바구니를 구성하여 표준가구의 최저비용을 계측하였다. 2025년 추정치는 2018년과 2021년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연간 상승률이 2022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은 노인과 비노인 간 생활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 가구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본 장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유지 비용과
노후소득 재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낮은 등 연령대별 소비 패턴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노인 특유의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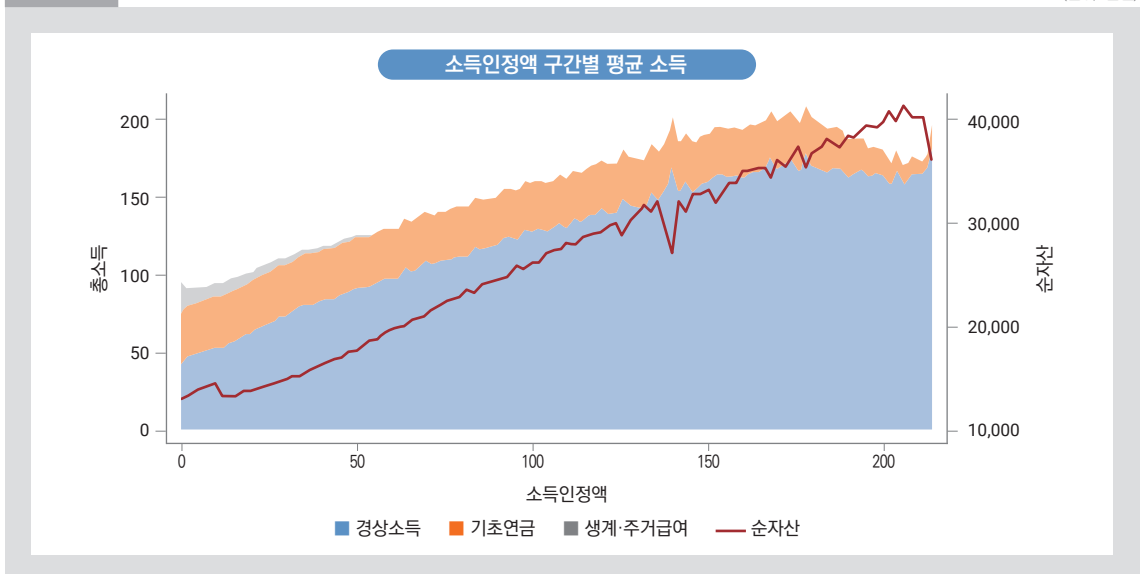
2. 노후소득 자원

노후소득 자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쓰이는 소득인정액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양한 노후소득 자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와 환산을 적용으로 실제 노후소득 규모와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 전수 자료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경상소득, 기초연금액, 생계·주거급여액, 순자산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미시자료 중 노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여 총 1,659,278건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총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액을 합산한 값이다.

그림 7 기초연금 수급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월평균 총소득

(단위: 만원)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연금 수급자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으며, 평균 순자산은 1.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였고, 평균 순자산은 2.6억원 수준이었다. 적정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본 생활비와 총소득의 차액으로 정의한다면, 차액이 음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0원)에는 현행 급여 대비 기초연금액을 인상해야 하고, 차액이 양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상)에는 기초연금액을 인하해야 함을 시사한다.¹⁰⁾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빈층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도 개편이 실현될 경우 최빈층의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복지급여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최옥금, 2020; 최성은, 2024). 최옥금(2020)이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였다.

V 마치며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기여형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필수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재정 여건 악화와 고령층 경제력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지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의 통합이나 최저

10) 자산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수급 대상 조정으로 인한 계층 간 반발과 세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보증연금 도입 등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은, 2024).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의 개혁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국가는 1990년대 후반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여 보편적 수당 방식에서 노인 인구의 약 35~38%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 체계로 전환하였다(한신실·홍정민, 2021).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600만 명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도로서,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 대상 조정으로 인한 계층 간 반발과 세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세대별·소득계층별 선호도 분석,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_____, 「연금통계」, 각 연도
 _____, 「e-나라지표」, 2023.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
-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2023.
- 김도현·이승희,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2025.
- 류재린,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각 연도
 _____,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연금수급자 미시자료」, 각 연도
- 안서연·최광성, 「NPRI 빈곤전망 모형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2.
- 윤석명·신화연·최미선·양혜진·김원섭,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승희,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2023.
- 최성은,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최옥금,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유인의 관계: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 한신실·홍정민, 『노인기초보장제도 역할 변화 및 배경에 관한 연구: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
- 〈온라인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검색일자: 2025. 12. 1.
 _____,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4. 5. 2.

Kipf

정책토론포트



제14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제14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개요

- 주 제 인공지능 및 혁신 기술 발전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평가 효율성 제고 방안
(Enhancing Efficiency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in the AI Era)
-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4일(화)
- 장 소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 참석자 57명
- 주 요 Andrew Blazey(OECD 공공 관리 예산부 부국장)
- 해 외 Ray Shostak(국제 컨설턴트, 전 영국 수상실 정책 이행 부문 책임자)
- 참석자 Eleanor Williams(호주 재무부 거시 담당 부차관 대행)
- Etienne Genet(프랑스 재무부 예산 통제 책임자)
- Sailendra Pattanayak(IMF 재정 담당 부서장)
- Chris Mihm(시라큐스대학 공공관리/국제관계학 초빙교수, 전 미국 감사원 전략과제평가단장
*11/4 on-line 참석)

포럼의 목적과 배경

- ◆ 제14차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은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많은 정부에서 공공 행정 시스템에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 영역과 인간 중심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는 공공 분야는 인공지능 및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에 있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고도로 표준화된 영역인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의 효율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필수적임

포럼 목표와 세션 구성

-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평가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세션 1: 재정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현안을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 세션 2: 재정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효율성 개선 모범사례 소개
- 세션 3: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의 평가 시스템 도입에 도전과제와 기회를 국제기구 관점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논의
- 세션 4: 재정성과관리와 정책평가에서 효율성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 및 주요 논의 내용 정리

DAY 1

11월 3일(월)

Session 1

Current issues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An efficiency perspective

Presentation 1

Andrew BLAZEY
(Deputy Head,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OECD)

1. 서론

- ◆ 본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 예측 및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체계 분절화, 심층평가의 한계, AI의 잠재적인 역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 특히 호주,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AI를 활용한 성과 평가에 대해 3~4년에 걸쳐 비교 분석하여 의의를 도출

2. 평가체제 분절화(Fragmented evaluation systems)

- ◆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중앙부처의 모니터링 및 협력이 어려워지고, 일선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분절화가 심화
- 주요 이슈를 요약하면 분절화된 평가체계, 평가의 우선순위 부재, 우선순위결정 절차 미흡, 평가결과와 예산결정 간 연계 미약, 평가자 역량 및 조직 내 지식 축적의 제한 등임

- ◆ 정책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는 재정, 책임성, 복잡성, 집행, 표준화로 정리할 수 있음
- 재정: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비용은 낮아졌지만 정보를 중복 생산하지 않도록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
- 책임성: 공공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비용 초과나 공공서비스 실패 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 복잡성: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직면하는 정책적 문제들
- 집행: 명시된 정책목표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
- 표준화: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면 부처별로 다르게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
- ◆ 또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평가 정보를 예산 결정 과정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보의 존재 여부보다 정보의 품질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3. 심층평가의 한계(Limits on in-depth policy evaluation)

- ◆ 심층평가에는 비용, 데이터, 기술, 정치경제, 활용능력, 대응방식, 책무성과 관련된 7가지 한계가 존재
- 비용: 심층평가는 목적 지향적이며, 설계 및 수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데이터: 데이터의 존재와 품질 관련 문제
- 기술: 평가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전문가 및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
- 정치경제: 평가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단 하나의 수단

- 활용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대응방식: 실시간 운영상 대응이 조직의 대응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
- 책무성: 제도적 경계의 분절, (정치적 및 행정적) 재임 기간, 결과 명시에 대한 한계
- ◆ AI를 활용한 심층평가는 데이터 수집·분석을 포함한 정책평가에서 필수적인 작업을 가속화 및 자동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 내 심층평가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임
- OECD에서는 정책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AI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Governing with AI' 관련 보고서를 통한 정부 차원의 프레임워크와 정책평가에서 AI의 잠재적 활용 및 한계 등을 제공

4. AI의 잠재적인 역할(Potential role of AI)

- ◆ AI의 도입을 통한 구조개혁은 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OECD 9월 경제전망보고서의 장기전망모델에 따르면 각 국가의 정부부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내용으로 상품시장 규제(PMR), 거버넌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은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AI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높은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와 백분율 차이를 통해 각 항목별 잠재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처럼 AI 도입의 잠재력이 크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

- ◆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BI 분석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블록체인 기술 각 영역에 대해 도입 국가들이 많지 않음
- 정부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예산과정에서 AI의 잠재적인 역할 또한 초기 단계 수준임
- AI는 예측, 지출결정, 예산계획과 모니터링, 재정관리 등 예산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는 특정 분야에만 초점
- AI를 활용하여 예측 오류를 줄이거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증거 기반 지출결정에 활용하는 등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송장 지불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일부 활용
- ◆ 공공재정관리(PFM) 데이터 인프라와 아키텍처 측면에서 오래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한계
- OECD 국가의 재무관리정보시스템 수명주기를 살펴보면 응답국가의 75% 이상이 10년 이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OECD 국가의 재정정보시스템(FMIS) 현대화 전략 조사(2022년) 결과, 32개국 중 14개 국가는 계획이 없고, 14개 국가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며, 4개 국가는 전체교체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 ◆ 다양한 그룹의 AI 문해력(literacy)을 고려할 필요
- 정부 운영에 AI를 통합하려면 ① 공무원의 업무 방식 변화 ②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 ③ 공무원의 조직 및 관리 방식이 필요
- 이를 위해 새로운 역할, 업무 및 기술 파악, 새로운 업무 방식 이해, AI가 거버넌스·의사 결정 및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
- AI 활용 능력 요건은 응용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AI 도구의 전문성에 따라 문헌 검토와 같은 연구 도구와 데이터 추출과 같은 범용 도구로 구분

5. 결론

- ◆ AI는 공공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 정책평가 측면에서 AI의 활용은 기존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해 더 빠르고 간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AI가 생성하는 추가 데이터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
- ◆ 공공부문은 AI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의 모든 이점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새롭고 차별화된 개발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우수하고 위험도가 낮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 초기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AI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의 정책은 숙련된 인력 역량 구축,

AI 관련 연구개발 투자, 대체·구조적 변화로부터 사회안전망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

Presentation 2

Heewoo KANG

(Director, Center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KIPF)

- ◆ 한국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효율성 이슈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는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로, 모든 부처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산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자율평가제도(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것으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임
-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는 사후평가의 일종으로, 다부처간 이슈(Cross-cutting issues)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해 사업(또는 사업군)의 효과를 분석함
- ◆ 한국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성과로는 성과 중심 재정 관리로의 전환 추진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 기반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음
- 「국가재정법(2021)」에 따라 성과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책 효과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자율평가를 통해 미흡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Subsidy Extension Evaluation)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문제 발생 시 보조사업을 축소·폐지하는 등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예산 배분에 기여하고 있음
- 부처별·사업별 성과 정보를 공개하여 공공 지출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 한국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성 관련 과제
- 성과평가제도는 재정 당국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 효율성 평가에 필요한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동일 품질의 성과 정보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더 유용하고 질 높은 성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 ◆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된 효율성 이슈
- 현재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주요 사업 지출 구조조정(Sector-based Spending Review)이 진행 중이며, 검토 대상 사업 선정, 지출 조정 방안 설계, 필요한 성과 정보에 대한 논의가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됨
- 이러한 통합평가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편된 성과평가제도를 기반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출 조정이 이루어지는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한국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효율성 관련 과제

- 평가 대상 및 목적 설정: 부처 간 평가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며, 심층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방향 설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자료 수집: 보고 요구가 중복되면서 평가에 대한 부담과 피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행태가 나타남
- 분석 및 검토: 성과 정보가 배분 효율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권고로 연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보고 및 평가: 성과목표관리제도가 예산 편성과 검토에 활용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반발도 존재하며, 결과가 공개되었음에도 접근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나타남
- 기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보다는 규정 준수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AI 활용 방안 모색

- 성과평가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AI 활용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고려하였음
 -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AI가 암묵적 지식을 이해하여 평가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또한 AI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및 자원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평가 범위와 목표 설정에서의 AI 활용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 영향을 예측하여 근거 있는 평가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 대안의 사전 분석을 통해 사업목표와 기대성과의 적절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함

● 데이터 수집에서의 AI 활용

- AI는 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지·분류하고 사람에게 의한 오류를 줄여 데이터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상황·선호 등 맥락을 파악하여 맞춤형 데이터를 식별하고, 문헌 검색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흩어진 자료를 빠르게 정리·통합할 수 있음

● 분석 및 평가에서의 AI 활용

-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발견하여 성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며, NLP를 활용해 문서·인터뷰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할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보완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과 분석과 준실험설계를 지원하고, 정책 집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수정·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보고 및 피드백에서 AI의 활용

- 생성형 AI는 방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요약·작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을 도출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시보드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또한 AI는 평가 결과 저장소와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시민·연구자 등에게 통제된 정보 접근을 제공해 협력과 개방성을 높임

● AI 활용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전제 조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 데이터의 품질·대표성 부족과 공유의 한계는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의 강화와 명확한 리더십 정의 및 법적·기술적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데이터 검증·감사를 통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와 자동 수집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AI 활용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전제 조건: 암묵지와 인간-AI 간의 협업 문제
- AI는 암묵지나 경험 기반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감 및 맥락의 이해 능력도 부족함
- 따라서 정교한 평가를 위해서는 AI 분석과 전문가 판단을 결합하고, 인간의 통제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용자의 역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함
- AI 활용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전제 조건: 비용 및 실행 문제
- AI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레거시 IT 시스템의 확장·유지 비용까지 증가해 재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이에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목표 기반으로 AI 투자를 계획하고, 중앙 차원의 지원과 디지털 인프라의 현대화, 오픈소스 기반의 공동 개발을 통해 AI 활용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함
- ◆ AI 시대 성과평가의 향후 과제와 방향
- AI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문서화 및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여 데이터의 질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AI를 효과적으로 성과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기술 혁신과 함께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Session 2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efficiency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Presentation 1

Eleanor Williams

(Acting Deputy Secretary of Macroeconomics, Australian Treasury)

◆ 발표 배경 및 목적

- 호주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증거 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개혁을 추진함
- 2025년 포럼 주제인 'AI 시대 성과관리 효율화'의 맥락에서, 호주의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통한 평가 내재화(culture of evaluation) 사례를 공유
- 주요 내용: 호주 정부의 평가 제도화 과정, 호주의 평가 정책 및 역량강화 전략, 예산 및 평가 제도 운영 등

◆ 호주 정부 평가제도 발전 연혁(2019~2025)

-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보고서(Independent Review of the APS) 「Our Public Service, Our future」에서 '중앙집중형 평가기능 필요성' 제기
- 2020년, 재무부에 중앙 평가팀 신설, 호주연방 평가 협의체(Commonwealth Evaluation Reference Group) 구성
- 2021년, 호주연방정부 평가 지침(Common-

- wealth Evaluation Policy & Toolkit) 발표 → 부처별 상이한 평가체계 표준화 착수
- 2022년, 정부 내 평가 실무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출범(약 800명 참여), 예산편성절차 운영지침(Budget Process Operational Rules, BPORs)을 개정하며 신규 예산사업의 평가 의무화 규정 신설
 - 2023년, 호주 평가센터(ACE) 공식 출범 → 재무부 산하 전담조직으로 평가 품질·활용 강화 목표, 전 정부적 평가 리더십 확립
 - 2024년, 평가를 공직자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는 '책임관리(Stewardship)' 가치 도입, 영향평가 시범사업(Impact Evaluation Partnerships) 수행, Hub&Spoke 평가 네트워크 구축(각 부처 내부 평가유닛 연계)
 - 2025년, 평가전문직(Evaluation Profession) 공식화, 호주연방 연례 평가 보고서(State of Evaluation Report) 발간
- ◆ 호주 평가센터(ACE)의 역할 및 조직
- 소속 및 규모: 재무부 거시경제국 산하, 약 20명 규모의 2개 유닛으로 구성
 - 영향평가팀(Impact Evaluation Unit): 주요 부처(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고용 등)와 협력하여 고품질 평가를 수행
 - 정책·역량팀(Leadership, Policy & Capability Unit): 정책기조 수립, 교육훈련, 자료·도구 개발, 평가문화 확산 등 공무원 역량 강화
 - 핵심 목표: 평가 증거를 정책설계와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어 호주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
 - 핵심 전략: Volume(평가 양적 확대), Quality(평가 품질 제고), Use(평가 활용 증진)
- 4대 중점 영역: ① 중앙 리더십 제공 ② 고품질 영향평가 수행 ③ 평가역량 강화 ④ 평가결과 활용 촉진
 - 운영체계: 부처 협력형 평가파트너십 체결, 연례 평가 보고서(State of Evaluation) 발간, 평가자료 공유 플랫폼(Evaluation Library) 구축·운영
 - 철학: 통제나 형식이 아닌 학습과 정책개선의 수단으로의 평가와 증거 기반 활동(Evidence-in-Action)을 지향
- ◆ 평가 원칙 및 정책도구
- 호주연방 평가 정책(Common-wealth Evaluation Policy): 부처별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fit-for-purpose) 지원을 위한 원칙 기반(principles-based) 정책
 - 정책 목표: 조직내 평가 문화 확산, 성과보고의 품질 제고, 평가 활용 방식 개선
 - 좋은 평가의 5대 원칙
 - 목적 적합성(Fit for purpose)
 - 유용성(Useful)
 - 근거·윤리·문화적 적합성(Robust·Ethical·Culturally appropriate)
 - 신뢰성(Credible)
 - 투명성(Transparent)
 - 연방정부 평가 지침(Common-wealth Evaluation Toolkit): 표준화된 프로그램 로직, 데이터 매트릭스, 평가설계 모범사례 제공
 - 평가 문화 확산을 위한 기타 활동: 평가 컨퍼런스, 호주 공공정책 무작위 실험(RCT) 리뷰, 우수 평가 사례 공유 행사 등

◆ 평가역량 강화 및 평가전문직 육성

- 평가역량 강화 전략: 4개 온라인 교육 기본 모듈 운영, 단기 집중교육 및 장기 파견 프로그램(예: 고용부 18개월 상주 등) 병행
- 평가전문직: 2025년 2월 정식 출범, 중앙·주·지방정부 공무원 및 계약직 참여 가능. 플랫폼 회원 4,000명 이상
- 전문직 네트워크를 통한 이벤트·세미나·사례 공유 및 상호학습 촉진
- 문화적 정착: 스튜어드십(Stewardship) 가치 내재화로 공직자에게 평가역량을 핵심 직무로 인식시키고 평가 참여 동기를 제고

◆ 예산 프로세스 및 평가제도 운영

- 예산운영지침(BPORs)을 개정해 모든 신규 정책·예산 제안은 평가 계획 및 사업 효과성 근거 제시 필요 → 정책설계 초기 단계에서 평가계획을 내재화하고, 집행 후 효율성·효과성 검증 기반 마련
- 총리실 소속 영향분석실(Office of Impact Analysis)이 사전(ex ante) 평가 수행, ACE는 사후(ex post) 평가 담당 → 정책 전 주기 평가체계 완성
- ACE의 영향평가 집중 사유: 기존에 주로 이루어졌던 과정평가는 핵심 질문인 예산 투자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향평가의 확대 필요
- 영향평가 방법론: 실험적, 준실험적(설계 기반), 비실험적(관측치 통제 기반)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에 초점

Presentation 2

Etienne GENET

(Head of Budget Control,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rance)

◆ 프랑스의 재정 현황 및 구조적 과제

- 프랑스는 1993년 이후 장기간의 재정적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는 약 -5%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GDP의 110~120%에 달함
- 주요 지출 항목은 사회보호(40.9%), 보건(15.6%), 경제(11%), 교육(8.8%), 일반행정(10.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지출의 비중이 특히 높음
- 최근 금리 상승과 부채비용 확대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개혁과 효율성 제고를 병행 추진 중임
- 특히 성과 기반 예산체계 강화와 AI 기반의 재정 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 중임

◆ 2025년 예산 미승인 사태와 그 교훈

- 프랑스는 2025회계연도를 승인된 예산 없이 시작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함
- 「예산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특별 법령에 따라 정부는 기존 세수 징수를 지속하며 필수 지출만 허용하는 임시체제를 가동함
- 2024년 12월 30일 특별 법령과 지침이 발표되어 부처별 필수 지출을 주간 단위로 검증·집행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고, 2025년 2월 14일 「예산법」 통과와 함께 종료됨
- 이 사례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
 -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 예산(zero-based budgeting) 개념이 재조명되었음
- 부처 간 협력과 예산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됨
 - 예산집행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됨
 - 임시체제는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했으나,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병존함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관리 혁신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SNIA)’을 수립하고 총 15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
 - 이 전략은 연구개발, 고등교육, 산업혁신, 윤리 기준 확립, 공공부문 적용의 다섯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Foncier Innovant: 항공사진을 활용해 미신고 건축물 및 수영장을 자동 탐지함
 - 2022년 2만건(1,000만유로) 적발에 이어, 2023년에는 15만건의 미신고 시설을 확인하여 약 4,000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함
 - ClaudIA 챗봇: 전자송장시스템(Chorus Pro)의 상담을 자동화하여 전체 문의의 80%를 처리하고 약 427명 인력에 해당하는 업무량을 절감함
 - Weak Signals: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여 정책 대응을 지원함
 - LLAmendments: 국회 예산 수정안을 자동 분류·요약하여 의회심사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함
 - AI 도입으로 행정업무량이 5배 증가한 상황에서도 인력 증원 없이 효율적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공무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분석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AI 도입에 따른 몇 가지 부작용들이 확인됨
 - 행정 접근성 향상에 따라 국민 문의량이 증가하는 ‘리바운드 효과’ 발생
 -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AI 기반 결정이 특정 인구 집단에게 불공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차별 위험
 -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 문제, 유지관리 비용,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
 - 이에 따라 프랑스 재무부는 ▲중앙집중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무원의 AI 역량 강화 ▲공공혁신기금(FTAP)을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 중임
- ◆ 지출검토(Spending Review)의 제도적 진전
-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공공지출이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약 7~10%p 높은 비율을 보임
 - 정부는 2023년 「재정법」과 2022-2027 재정운용계획법에 근거하여 지출검토제도를 운영함
 - 지출검토는 총리실이 주도하며, 예산국이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감사국(IGF)이 분석을 지원함
 - 2023~2025년 동안 총 30개 주요 공공정책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거정책, 사회보장기금 운영비, 청년정책, 기업지원, 법률비용, 긴급숙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성과 기반의 구조개혁과 우선순위 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 지속성과 정책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함

◆ 정책적 시사점

- AI는 공공부문의 기술혁신을 넘어 재정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는 세무행정, 회계 처리, 정책평가 등 전 영역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교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그러나 AI의 확대는 데이터 윤리, 법적 규제, 공공 거버넌스, 인력 재교육 등 새로운 과제를 수반함
- 이에 따라 중앙집중형 관리체계 확립,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프랑스의 경험은 “AI 기술의 도입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이지만, 그 지속가능성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책임 있는 관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줌

Presentation 3

Seong Jin KIM

(Fellow, Center for National R&D Evaluation,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전략계획 검토

◆ 기획 방향

- 국회 확정 예산을 반영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상위계획, 주요 과제, 연차별 성과목표·지표, 추진 전략 및 평가계획 등을 포함
- 사업 목적과 내용이 예산규모 및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획

◆ 목적

- 예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의 일관성 확보

- 부처가 수립한 전략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전략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자율평가, 성과활용, 효과성 분석 등 후속 평가의 기준을 마련함

◆ 검토대상

- 당해 연도 신규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평가·특정평가 결과 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포함
- 차년도 전략계획이 미수립된 계속사업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전략계획 수립 지침

-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기존 사업 중 기획보고서가 없는 경우, 사업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연구개발의 내용이나 방향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2. 전략계획 검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 2025년 검토 대상 및 규모

- 총 25개 부처, 429개 사업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는 10조 1,080억원 수준

◆ 검토대상 유형

- 신규사업: 전략계획 미수립 일반 R&D 사업
- 단계별 재수립: 각 사업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계획 수정

- 부처 요청: 예산 변동, 목표·지표 조정, 구조조정 등 사유 발생 시 계획 수정
- 다부처·유형 변경: 사업 통합 또는 단일화 등으로 인한 신규 수립 또는 계획 수정

◆ 주요 정책 아젠다

- 국제 공동연구: 글로벌 협력성과 창출 가능성, 역할 분담·성과지표 설정 여부 검토
-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창업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화 중심 지표 검토
- 도전형 연구개발: 연구 과정의 혁신성 및 완결성, 파급효과 중심의 지표 설정 여부 점검
- 부처 공동사업: 부처 간 역할 분담, 통합·개별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협력 구조 검토

◆ 전략계획 검토 시 포함되는 내용

- 사업명·목적·배경,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점검 필요
- 프로젝트 유형·추진체계 명확화 및 기대성과·성과 지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참고 사례

- 프로젝트 유형 분류의 필요성
 - 기초-단기-중·장기 등 R&D 단계 구분을 통해 사업 특성을 반영할 필요
- 범부처 프로젝트 추진
 - 협업사업의 경우 통합/개별관리 구분 및 역할 명확화가 요구됨
- 리스크 요인 분석 체계 강화
 - 주요 위험요인의 사전 식별 및 위험 발생 시 대응·완화 방안 마련 필요

- 연차별 로드맵 설정
 - 단계별 목표와 핵심 개발 내용의 연계 및 추진 일정과 목표 간 일관성 확보 필요
- 수혜 대상 명확화
 - 기관·기업·수요자 등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슈

- 유형별 정보의 평가 반영 미흡
 - 사업유형 및 추진방식이 평가 과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차별성 약화
- 계획·예산·평가 정보 제출 부담 증가
 - 동일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이 중복되어 기관의 행정 부담 과다 발생

◆ 성과목표 및 지표 상세 검토

- 성과목표의 타당성·구체성
 - 단계별 목표와 최종 목표 간 연계 부족
 - 실행계획과 목표 간 정합성 강화 필요
 - 예산·우선순위 고려한 목표 간 가중치 설정 어려움
 - 이슈: 성과목표-지표-측정방법 간 체계적 연계 부족
- 성과지표의 대표성·명확성
 - 성과지표가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계 및 검증 가능성 강화 필요
 - 이슈: 논문·특허 등 산출지표 과다 사용으로 차별성 및 성과 확인 어려움
- 성과측정 방법 및 근거자료 타당성
 - 성과 산정 방식과 지표 해석 기준 간 정합성·객관성 확보 필요

- 이슈: 측정·검증 기준 표준화 미흡으로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

3. 전략계획 점검의 고도화 방향

◆ R&D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개선

- 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성
 - 예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 제출 부담 완화
- AI 기반 기능 고도화
 - 유사사업 분류·지표 제안 등 자동화 기능으로 작성 효율 제고
- 사용자 중심 시스템 재구성
 - 메뉴 구조 정비 및 입력·검증 기능 강화로 오류·누락 최소화

◆ 예산배분·조정과 평가 연계 강화

- 전략계획 점검의 정례화
 - 전략계획 수립-예산배분-집행-성과평가가 연계된 순환구조 필요
- 예산편성 이후 계획 수정 체계화
 - 국회 확정 후 변경 시 전략계획 재제출 체계화
- 연간 절차 운영
 - 1~2월: 전략계획 수립 및 제출
 - 3~4월: 컨설팅 실시를 통한 조기 보완
- 소규모 신규 사업 증가 억제
 - 검증되지 않은 신규 소규모 사업 증가 억제 필요

◆ 사업분류체계 개선

- 사업유형별 대표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인프라 중심 기준을 전체 R&D 유형으로 확대

- AI 기반 지표 추천 시스템 도입
 - 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자동 지표 제안 시스템 도입 필요
- 정보 요구 부담 완화
 - 기존 전략계획 내 자료 재활용 구조 설계로 추가 자료 생산 최소화

Session 3

AI and advancement integration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ation 1

SAILENDRA PATTANAYAK
(Division Chief at the Fiscal Affairs Department of the IMF)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정여건과 과제

◆ 현황 및 배경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팬데믹 이후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개발도상국 모두 재정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함으로써, 추가 재정 여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정책적 대응 필요성

- IMF 「Fiscal Monitor」(2025)에 따르면, 다수 국가가 지출 합리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재정위기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

출을 삭감하기보다는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를 강화하여, 성장·복지·디지털화 등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원 재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됨

2. 성과예산 및 관리의 핵심요소

- ◆ 성과예산은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임
- 성과예산의 핵심요소는 '3C(Clarity·Capability·Collaboration)'로, 명확한 목표 설정(clarity on outcomes), 수행역량 강화(capability),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collaboration)이 필수적임
- 다만, 프로세스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디지털화나 AI 도입은 오히려 성과관리체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 성과예산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음
- 전략목표·우선순위 연계성: 예산, 정책, 프로그램 간의 목적 및 성과목표가 명확히 일치해야 하며, 정책성과를 재정배분에 반영해야 함
- 유의미한 성과정보 제공: 데이터 분류체계 및 지표를 표준화하고 중복성을 제거해야 함
- 성과지표의 결과중심 전환: 산출(output) 중심 지표에서 결과(outcome) 중심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성과지표 설계가 필요함
- 비용효율 성과보고: 불필요한 데이터 과잉을 방지하고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성과평가 피드백 루프: 사후평가가 아닌 기획-집행-모니터링-평가의 순환 피드백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함

◆ 아시아 국가 성과관리체계의 한계 및 도전과제

- 각국 정부는 성과보고 의무와 정보수집 부담에 비해 결과 전달 및 활용의 실효성이 낮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나타남
- 성과정보의 품질이 낮거나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제한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사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정보 세분화가 미흡하여, 정책결정자·집행자·국민 등 수요자별 맞춤 정보 제공이 제한됨
- 부처 및 기관별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편차가 커 통합적·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움
-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유인체계)가 미흡하여, 부처의 자발적 성과 개선 동기가 약화되고 있음

3. 인공지능(AI) 활용의 역할과 잠재력

- ◆ AI는 범용적 해결수단이 아니며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 AI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약인공지능(Narrow AI)"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요구됨
- AI 기술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적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윤리성 확보를 위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 성과관리에서 AI 적용 사례 및 시사점
- 브라질은 상파울로 공립학교 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ML)을 활용하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례를 탐지, 예산 낭비요인을 파악함

- 멕시코의 다양한 행정데이터(재정집행, 성과지표, 수혜자 정보 등)를 통합하여 종합 성과정보를 산출하고, 자연어처리(NLP)를 이용해 질적 데이터를 분석, 정책평가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함
- 페루와 필리핀은 드론, LiDAR,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대형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함
- 동 사례들은 데이터 거버넌스(표준화·투명성·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책임성·편향 방지·인간 감독) 체계가 성공적 AI 도입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

4. 결론

-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과예산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와 시의 책임 있는 활용은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적 기회로 평가됨
- 그러나 AI를 도입하기 전, 데이터 품질·성과지표 체계 등 성과예산 시스템, 평가 프레임워크가 중요함
- AI는 수작업 보조(데이터 수집·요약 등), 실시간 평가, 성과측정 강화, 이상탐지 등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할 때, 정책 성과 제고로 이어짐
- AI 활용 시, 명확한 윤리원칙과 감독체계가 필요하며, 인간의 판단과 기술적 분석이 균형을 이루는 책임있는 AI 거버넌스가 요구됨

Presentation 2

Kyongsun HEO

(Director, PEMNA secretariat/Center for Asia-Pacific Fiscal Affair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연구배경

- ◆ 한국 공공재정 분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PEMNA) 회원국의 높은 관심도와 국내 주요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의 필요성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함
- 한국은 「2024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4위, 「Tortoise 글로벌 AI 지수」에서 83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전자정부·AI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국내 유관기관들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2개년('24~'25년)에 걸쳐 공공재정 디지털 전환 현황/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으며, 내용을 5가지 사례(재정정보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소개와 시사점, 후속과제로 구성함

2. 공공기관별 재정 및 행정시스템 운영 사례

- ◆ 재정정보원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기존 dBrain이 제공하던 공공재정분야 13개 업무 기능에 더해, 재정통계·국고채무 관리·재정예측 등 11개 기능을 추가하여 재정분석의 통합성과 정밀성을 강화함
- 7만 9천여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범정부 재정 데이터의 융합 및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정책당국의 예산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후속과제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 예산·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출함
- 모듈별 데이터 표준화 및 예산관리 전 과정에 도입, 데이터 정책 수립과 전담조직 설립,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 예산지원이 요구됨

◆ 국세청 「홈택스」

- AI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 및 납세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세무행정을 효율화한 대표적 디지털화 사례 중 하나임
- 구체적으로 ▲미리채움서비스(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편의서비스) ▲스마트서치(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검색결과 제공) ▲AI 활용 문자·전화상담 자동응답 ▲탈세 적발시스템 등을 운영함
- 후속과제로는 내·외부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대한 관계 법령·제도 개선, AI-내부인력 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장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직된 임금체제로 AI 인력 유치가 어렵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으로 인해 데이터 연계가 제한되며, AI의 판단과 내부 직원의 행정적 책임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요구됨

◆ 한국자산관리공사 「AI 기반 국유재산 관리 고도화」

- 내부직원을 위한 AI 챗봇 시스템과 재산실태조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 중임

- 복잡한 국유재산 법령과 내부 매뉴얼을 학습·안내하는 챗봇을 개발하였으며, 항공사진·GPS 정보를 결합한 영상지도를 활용해 AI가 재산 변동을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 예정임
- 후속과제로는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기술발전 속도와 행정절차 간의 괴리 해소가 필요함
- 고성능 GPU 확보 및 전력 인허가 문제가 있으며, 예산심사와 의사결정 지연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 20년 이상 운영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노후화와 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 중임
- 외부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트랜스포머 기반 AI챗봇과 키워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입찰 혼잡도 예측, 수요분석, 맞춤형 상품추천 등을 지원함
- 후속과제로는 AI의 정확도 향상과 데이터처리 성능 개선이 필요함
- 챗봇의 오답률이 높고, 데이터 양이 방대해 시스템 속도 저하가 발생하며, 검색범위 제한 등으로 성능 최적화의 과제가 남아 있음

◆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신뢰플랫폼 (Chak)」

- 블록체인·AI 기술을 결합한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결제, 디지털 워터마크 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함
-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기술로 개인정보의 자기주권을 확보하고,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신분증 7종 중 4종을 디지털화함

- 지류·카드형 지역화폐를 모바일로 전환하고, AI가 생성한 워터마크로 디지털 저작물의 원본성을 보장함
- 후속과제로는 기술표준 정립, 제도 정비, 타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공공서비스 간 상호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활용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문제점 및 후속과제

- ◆ 조사 사례를 토대로 AI·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책임성 ▲시의성 ▲인적자원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 책임성 차원에서, AI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배분 비효율성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에 따라 법과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시의성 차원에서, AI 사업은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나 예산편성·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AI 도입에 있어 유연하고 신속한 및 검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인적자원 차원에서, AI 전문 역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내부인력 역량 강화 및 외부인력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거버넌스 차원에서, 데이터 칸막이로 인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함

DAY 2

11월 4일(화)

Session 4

Going Beyond: Revisit the value of efficiency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Presentation 1

Chris MIHM

(Adjunct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and former managing director of strategic issu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 미국의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 미국의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은 다음과 같음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 1993)
 - 「GPRA Modernization Act」(GPRAMA, 2010)
 -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Evidence Act, 2018)
- 해당 법률들은 ‘증거(evidence)’를 생성하고 이를 정책, 프로그램, 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OMB는 이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장려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데이터에 근거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법률들은 OMB Circular A-11, 대통령 관리 의제, 각 부처의 노력, 범부처적인 협력 등을 통해 이행됨. 이 중 Circular A-11는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관리요소를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OMB의 의도를 보여줌

◆ OMB의 '증거(evidence)'에 대한 정의

- OMB는 '증거(evidence)'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여 성과 정보, 통계, 프로그램 평가, 정책 분석, 데이터 분석, 행정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정보의 출처보다는 검증 가능한 품질 및 신뢰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OMB의 접근법은 증거의 형태나 분야에 제한받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관련 데이터와 분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평가'와 '증거 활용'에 대한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음
 - GAO(2017) 설문조사에서 연방관리자의 40%만이 지난 5년간 자신이 관여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평가가 수행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대통령의 2019 회계연도 예산 분석 보고서(President's FY 2019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에서는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부족하여 증거 기반 정책결정이 매우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증거 기반 정책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 2016년 「의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개인정보와 기밀을 보호하면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음
- 행정 데이터의 품질, 공유, 보호에 초점을 두었으며 행정부, 의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
- 2017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 보고서는 이후 「Evidence Act」(2018)의 입법 기반이 되었음

◆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Evidence Act, 2018), Title 1

- 「Evidence Act」(2018), Title 1에서는 각 행정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
 - 포괄적 중장기 증거 구축 계획(Learning Agendas) 수립
 - 증거 구축 활동 수행 역량의 주기적 점검
 - 연례적 평가 계획 수립
- 구체적인 실행전략
 - 증거 구축 계획(Learning Agendas):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전략 계획에 따라 4년마다 공개함. 개발할 증거에 대한 정책 질문, 획득·사용할 데이터, 방법론, 제약 사항 등을 명시
 - 기관 역량 평가(Agency Evidence-Building Capacity Assessments): 증거 구축 활동의 범위, 품질, 방법, 효과성, 독립성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이를 기관 전략 계획과 함께 공개함. 현재 평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기관의 지원, 평가 방법의 활용,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
 - 연간 평가계획(Agency Annual Evaluation Plans): 각 회계연도에 수행할 주요 평가주제와 데이터 수집·활용계획에 대하여 기관의 연간 성과계획과 함께 공개
 - OMB의 역할: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별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각종 대통령 및 OMB 지침, OMB 회람 A-11 제 290항 등을 참고)
- 조직
 - 평가 담당관(Evaluation Officers): 평가 방법론 및 평가 실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기관의 증거 구축 활동 포트폴리오 및 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 기관의 평가 정책 및 증거 구축 계획 개발 및 시행을 담당함. OMB의 지침에 따르면 평가 결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함

- 평가위원회(Evaluation Officer Council): OMB 지침에 따라, 기관 평가 담당관들이 참여하며 평가 정보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OMB와 조정 및 협력을 진행함

◆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프레임워크

- 최근 GAO 및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사이에 연방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이 9배 증가
- 보훈부는 의료영상 분석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논문 및 데이터 기반의 전염병 감시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AI는 행정지원 영역에서 문서 작성 및 정보검색 지원, 성과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GAO 및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에서는 정부의 AI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
- 책임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활용 사례 개발 및 성과 도출
- 데이터의 품질, 신뢰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 위험 관리 및 기회 활용
-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 적용
- AI 개발 및 관리, 활용 기술 향상과 관련한 직원의 역량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명성, 책임성 제고

Wrap-up

Ray SHOSTAK

(Consultant and former Head of the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United Kingdom)

- ◆ 앞선 발표를 통해 확인된 각국의 효율적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Andrew BLAZEY

- 평가결과와 예산결정 과정 간의 연계성이 미흡함
- AI를 활용한 심층평가의 한계가 존재함
- 반대로, 일상적 평가 업무에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잠재적 위험으로 지적됨

• Heewoo KANG

- 평가 과정에서 부처 간 의사소통 및 데이터 협력의 단절이 존재함
-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 내부 또는 정치적 차원의 저항이 발생함

• Sailendra Pattanayak

- 성과정보의 품질 저하 및 낮은 관련성이 문제로 지적됨
- 정부 부처 간 평가체계의 상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함

• Etienne Genet

-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제기됨

• Chris Mihm

- 과거에는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Ray SHOSTAK

- 실제로 정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 및 공공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개선 논의 시 정부

- 부처의 의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평가결과가 잘 제공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약 20% 수준에 그침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AI를 성과관리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AI 또는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생성된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AI 및 증거 기반 정책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기술적, 윤리적 측면의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무원의 AI 활용률 제고를 위해 교육, 인센티브, 조직문화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보호,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AI 도입을 뒷받침할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
- ◆ 그러나,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있어 보편적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에 각 국가의 제도적·행정적 여건에 부합하는 상황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 시스템의 현황
- 제한된 자원하에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
 - 책임성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을 통한 사업의 추진 내용 및 달성된 성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며, 집행
- 관련 문제 또는 부진한 성과에 대한 환류 부재
- 불평등, 소외계층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이슈의 해결에 있어 다부처의 협력 필요
 -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간 괴리
 - 공유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방법론, 도구 등의 부재로 개별 부처나 기관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추진
- ◆ 성과관리·평가의 핵심 과제
- 성과관리제도의 활용성 증대: 예산과 평가 결과의 연계가 약하며, 성과정보가 실질적 정책 결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표준화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각 부처 및 기관마다 평가 프레임워크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방법론이나 도구가 부족하여 정보의 활용성과 비교 가능성 저하
 - 기타: 예산 및 인력 등 자원 제약, 복잡한 정책 환경,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낮은 품질의 성과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 등 해결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가 상존
- ◆ AI 활용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
- AI는 데이터의 분석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기능(NLP)이나 자동화를 통해 정책평가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보유
 - 반면, 실제 활용 측면에 있어 데이터 오류, 편향된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제한, 전문 인력 부족, 에너지 소비와 환경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도입에 있어 업무 및 조직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역할과 역량,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및 주요국 사례

- 한국은 성과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이슈와 함께 성과정보의 질적 한계(데이터 가공·분석력 부족, 다양한 사용자 요구 미흡, 활용 유인 부족 등 성과정보의 질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AI의 활용 가능성 모색
- 미국·영국 등은 최근 AI 활용을 극적으로 확대하며, 평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기관 협력, 리더십 및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여러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공공부문, 재정성과 분야에서 AI의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 강화,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범정부 협력 등이 핵심 요인으로 논의될 필요

◆ 결론 및 미래 전망

- AI는 성과정보 분석 자동화, 데이터 간 상관관계 탐지, 조기 경보, 평가 보고서 요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분야에 있어 정책의 인간 의사결정 의존성과 내재적 다양성이 AI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성과관리·평가 프레임워크의 혁신을 위해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 이전에 조직 문화, 인력 역량,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 개혁 등 리스크 관리와 조직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KIPF**

Kipf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2026년 과세 연도 세금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10월 9일, Revenue Procedure 2025-32¹⁾를 통해 「One, Big Beautiful Bill, OBBB」 법안에 따른 개정안을 포함하는 2026년 과세연도(tax year 2026) 인플레이션 조정안(inflation adjustments)을 발표함²⁾³⁾
 - ▶ 미혼 납세자 및 별도 신고 기혼자의 표준 공제액은 \$16,100⁵⁾로 인상됨
 - ▶ 세대주(Heads of Households)의 표준 공제액은 \$24,150⁶⁾로 인상됨
- (OBBB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표준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됨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변경 사항
 - ▶ 부부 공동 신고의 표준 공제액이 \$32,200⁴⁾로 인상됨
- 한계세율(Marginal Rates): 소득이 \$640,600⁷⁾ (부부 공동 신고 시 \$768,700)⁸⁾를 초과하는 개인 단독 납세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7%로 유지가 되며, 소득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표 1 2026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안 표준공제 변경 사항

(단위: USD)

구분	개인 및 별도 신고 기혼자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OBBB에 따른 과세연도 2025	15,750 (약 2,276만원)	31,500 (약 4,553만원)	23,625 (약 3,414만원)
OBBB에 따른 과세연도 2026	16,100 (약 2,327만원)	32,200 (약 4,654만원)	24,150 (약 3,490만원)

주 괄호 안의 금액은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의 대략적 금액임

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IRS), "IRS releas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6, including amendments from the One, Big, Beautiful Bill," 2025. 10. 9.,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6-including-amendments-from-the-one-big-beautiful-bill>, 검색일자: 2025. 11. 5.

1) Revenue Procedure는 관보(Bulletin)에 게시되는 절차에 대한 공식 성명(official statement)으로 납세자 또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성명임

2) Internal Revenue Service(IRS), "IRS releas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6, including amendments from the One, Big, Beautiful Bill," 2025. 10. 9.,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6-including-amendments-from-the-one-big-beautiful-bill>, 검색일자: 2025. 11. 5.

3) 상세 내용은 출처의 Revenue Procedure 2025-32 참조

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53만원임

5)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26만원임

6)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90만원임

7)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억 2,592만원임

8)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1,107만원임

- ▶ 소득 \$256,225⁹⁾(부부 공동 신고 시 \$512,450)¹⁰⁾ 초과 시 35%
- ▶ 소득 \$201,775¹¹⁾(부부 공동 신고 시 \$403,550)¹²⁾ 초과 시 32%
- ▶ 소득 \$105,700¹³⁾(부부 공동 신고 시 \$211,400)¹⁴⁾ 초과 시 24%
- ▶ 소득 \$50,400¹⁵⁾(부부 공동 신고 시 \$100,800)¹⁶⁾ 초과 시 22%
- ▶ 소득 \$12,400¹⁷⁾(부부 공동 신고 시 \$24,800)¹⁸⁾ 초과 시 12%
- ▶ 소득이 \$12,400¹⁹⁾(부부 공동 신고 시 \$24,800)²⁰⁾ 이하 시 10%
- 대체 최저세 면제액(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Amounts): 미혼 개인에 대한 면제액 한도는 \$90,100²¹⁾이며 소득 \$500,000²²⁾ 초과 시

단계적으로 삭감됨(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면제 한도액은 \$140,200²³⁾이며, 소득 \$1,000,000²⁴⁾ 초과 시 단계적으로 삭감됨)

- 상속세 공제(Estate Tax Credits): 기본 공제액 한도가 2025년 \$13,990,000²⁵⁾에서 2026년부터 \$15,000,000²⁶⁾로 상향됨
- 입양 공제(Adoption Credits): 입양 비용(qualified adoption expenses) 최대 공제액은 2025년 \$17,280²⁷⁾에서 2026년부터 \$17,670²⁸⁾로 인상됨
- 고용주 제공 육아 세액 공제(Employer-Provided Childcare Tax Credit): 최대 공제 금액이 \$150,000²⁹⁾에서 \$500,000³⁰⁾로 인상되었으며, 고용주가 적격 중소기업(eligible small business)인 경우 \$600,000³¹⁾ 공제됨

9)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039만원임
 10)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079만원임
 1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164만원임
 1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8,337만원임
 1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279만원임
 1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59만원임
 15)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85만원임
 16)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471만원임
 17)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2만원임
 18)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85만원임
 19)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2만원임
 20)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85만원임
 2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026만원임
 2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2,290만원임
 2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72만원임
 2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4,600만원임
 25)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2억 2,254만원임
 26)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6억 8,249만원임
 27)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97만원임
 28)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54만원임
 29)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1,682만원임
 30)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2,275만원임
 3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6,742만원임

- (기타 사항) 인플레이션 연동되어 영향을 받는 기타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s):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25년 \$8,046³²⁾에서 \$8,231³³⁾로 상향됨
- 의료 저축 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단독 보장(self-only coverage) 가입자와 가족 보장(family coverage) 가입자의 공제액이 상이함
 - ▶ 단독 보장 가입자: 연간 공제액의 하한은 \$2,900,³⁴⁾ 상한은 \$4,400³⁵⁾임
 - ▶ 가족 보장 가입자: 연간 공제액의 하한은 \$5,850,³⁶⁾ 상한은 \$8,750³⁷⁾임
 - ▶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5년 \$130,000³⁸⁾에서 \$132,900³⁹⁾로 인상됨
- 증여 연간 공제(Annual Exclusion for Gifts): 증여의 연간 공제액은 \$19,000⁴⁰⁾로 유지되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연간 공제액은 2025년 대비 \$4,000⁴¹⁾ 인상된 \$194,000⁴²⁾임
- (의의) 이러한 조정은 세금의 가치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려는 국세청의 목표를 반영함⁴³⁾
- 또한, 2027년 납세 대상자들에게 2026년도 신고서 제출 시 정확한 납부 금액과 절감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맞는 과세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됨

3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63만원임

3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9만원임

3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9만원임

35)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6만원임

36)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5만원임

37)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64만원임

38)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791만원임

39)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210만원임

40)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46만원임

4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8만원임

4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8,042만원임

43) Taxes for Expats, "IRS announces 2026 tax brackets and inflation adjustments(One Big Beautiful Bill)," 2025. 10. 10., <https://www.taxesforexpats.com/articles/news/irs-announces-2026-tax-brackets-inflation-adjustments.html>, 검색일자: 2025. 11. 6.



프랑스

2026년 예산안 발표

- ◆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0월 14일,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함⁴⁴⁾ 45)
- 2026년 예산안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니 총리의 사임(2025. 10. 6.)으로 일주일 정도 지연되어 제출됨
 - 프랑스 예산안은 예산 시행 전년도 10월 첫째 주 화요일까지⁴⁶⁾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2026년 예산안의 제출 기한은 2025년 10월 7일까지였음
 -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10월 10일,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니 총리를 재임명함⁴⁷⁾
- 2026년 예산안 중 조세 부문은 지주회사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골자로 함⁴⁸⁾
 - 프랑스 재정감사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산 과세 도입 등으로 65억유로⁴⁹⁾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위원회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대중의 반발로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 (법인소득세) 지주회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설, 대기업대상 특별 부담금 제도 연장, GloBE 규칙 개정 등⁵⁰⁾
 - 개인의 미분배 소득에 대한 배당 회피 및 소득 은닉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의 자산에 대해 2% 자산세를 신설함
 - (과세대상 요건) 지배구조,⁵¹⁾ 자산규모,⁵²⁾ 수익구조⁵³⁾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지주회사로 다른 과세대상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함
 - (과세대상 자산) 사업용이 아닌 유형자산 및 부동산, 현금 및 타 회사 주식의 일부, 자산보유회사의 주식임
 - 프랑스 소재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법인소득세로 납세하고, 해외 소재 법인의 경우 프랑스 거주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함

44) 프랑스 정부, "Présentation du PLF 2026 et du PLFSS 2026," 2025. 10. 13., <https://presse.economie.gouv.fr/ip-presentation-du-plf-2026-et-du-plfss-2026/>, 검색일자: 2025. 11. 10.

45) IBFD, "France Introduces 2026 Finance Bills: Targets Holding Companies, High Earners," 2025. 10.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15_fr_1.html, 검색일자: 2025. 11. 10.

46)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제39조

47) 「동아일보」, 「마크롱, 사임한 르코르니 4일 만에 총리로 재임명」, 2025. 10. 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6467?sid=104>, 검색일자: 2025. 11. 10.

48) taxnotes, "France - Instability Threatens French Budget, Finance Watchdog Warns," Volume 120, Number 3, October 20, 2025., p. 490.

49) 2025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조 388억 8,500만원임

50) IBFD, "2026 Finance Bill in Depth: New Tax on Holding Companies, Extension of CIT Surcharge for Large Companies, Amendments to GloBE Rules Among Key Tax Measures for Companies," 2025. 10.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10-17_fr_3, 검색일자: 2025. 11. 10.

51) 개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의결권 또는 재무권의 33.33%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함

52) 회사의 총자산 시가가 500만유로 이상임

53) 영업 및 금융소득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예: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자산 처분 이익 등)을 말함

- 대기업 대상 특별 부담금 제도를 1년 더 연장함
 - (대상) 프랑스 내 매출이 10억유로 이상인 기업임
 - (세율) 연 매출액이 30억⁵⁵⁾유로 미만인 기업의 경우 10.3%, 30억유로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6%임
-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GloBE 규칙을 개정함
 - MNE 그룹에 다른 프랑스 구성 기업이 없는 경우 QDMTT에서 투자 기업(IE) 및 보험 투자 기업(IIE)을 면제함
 - 최초 GIR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수정된 GloBE 정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DAC9 구현)
- 기업 생산부가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제도를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함
 - CVAE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음
- ◆ (개인소득세) 주요한 개인소득세 조치는 법인소득세에서도 언급된 지주회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인 자산세를 도입하는 것임⁵⁶⁾
 - 지주회사의 금융자산에 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함
 - 지주회사가 프랑스 국외에 등록 사무소를 두는 경우, 해당 주식의 33.33% 이상을 보유하는 세무상 프랑스 거주자는 개인소득세로 자산세를 납부함
 - 고소득자에게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소득자 차등 기여금 제도'를 연장함
 - 이 기여금 제도는 기준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25만유로,⁵⁷⁾ 부부의 경우 50만유로⁵⁸⁾를 초과하고 평균 세율이 20% 미만인 납세자에게 적용됨

54) 2025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974억 4,000만원임

55) 2025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조 931억 6,000만원임

56) IBFD, "2026 Finance Bill in Depth: New Financial Asset Tax for Holding Companies Among Key Individual Income Tax Measures," 2025. 10.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10-16_fr_2, 검색일자: 2025. 11. 10.

57) 2025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2,443만원임

58) 2025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4,862만 5,000원임



독일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확대 법안 초안 승인

- ◆ 2025년 10월 15일, 독일 연방내각(Bundesregierung)은 순수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2025년 이후로 연장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함⁵⁹⁾
 - 독일 연방내각은 「자동차세법」 제8조 개정안을 승인하여, 순수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35년까지 연장함
 - 기존 면제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5년 연장되고, 2026년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최대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됨
 - 본 조치는 전기차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독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교통 부문 기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 독일 연방 재무장관 겸 부총리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함
 - 즉, 전기차 세제 혜택의 지속적 제공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략 산업의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한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임
- ◆ 최근 독일의 전기 모빌리티(Elektromobilität)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로는 ① 전기 모빌리티 촉진 조치 채택 ② 전기차 세제 혜택(세액 공제·감가상각) 확대 ③ 전기차 조기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음⁶⁰⁾
 - (전기 모빌리티 촉진 조치 채택) 최근 수개월간 독일 정부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채택함
 - 2025년 10월 8일 연합위원회(koalitionsausschuss)에서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의 기후 중립적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기후사회기금(EU Social Climate Fund)과 기후 기금 프로그램(Klimatransformationsfonds, KTF)을 통해 2029년까지 총 30억유로⁶¹⁾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합의함
 - (전기차 세제 혜택: 감가상각 확대) 전기차 구입 시 첫째 투자비용의 75%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
 - 또한, 전기차 세제 적용 기준가격(Bemessungsgrundlage)⁶²⁾은 종전 7만⁶³⁾유로에서 10만유로⁶⁴⁾로 상향됨

59) IBFD, "Government Approves Draft Bill Extending Vehicle Tax Exemption for E-Vehicles," 2025. 10.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15_de_2.html, 검색일자: 2025. 11. 4.

6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독일 연방 재무부), "Steuerbefreiung für Elektroautos wird verlängert: Bundesregierung stärkt den Automobilstandort Deutschland," 2025. 10. 1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10/2025-10-15-steuerbefreiung-fuer-elektroautos.html>, 검색일자: 2025. 11. 6.

6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조 24억원임

62) 세제 적용 기준가격(Bemessungsgrundlage)은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초 출고가격(Bruttolistenpreis)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가격(상한)을 의미함

6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672만원임

6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674만원임

- 위의 두 조치 모두 단기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실질적 세제 혜택임
- (전기차 조기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전기차 조기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6년 경감 규모는 총 5천만유로⁶⁵⁾에 달하며, 이후에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대 3억 8천만⁶⁶⁾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탈리아

2026년 예산안 초안 승인

- ◆ 이탈리아 각료회의(Consiglio dei Ministri)는 2026년 예산안 초안(Disegno di Legge di Bilancio 2026)을 승인하여, 가계의 실질 구매력 회복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는 다수의 세제 개편 조치를 확정함⁶⁷⁾⁶⁸⁾
- 이번 예산 초안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혁신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음
- 해당 조치는 2025년 10월 15일 경제부 장관 발표에 따른 2026년 예산안 초안 설명자료에 기반하며, 세부 시행 내용은 향후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이번 2026년 예산안 초안은 가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이후의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세제 조정을 통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분명히 함
-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조치와 친환경·혁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지역 간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형 공제 제도는 사회적 포용력과 경제적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65)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3억원임

66)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32억 3,200만원임

67) IBF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utlines Measures of 2026 Draft Budget Law, Confirming Tax Credits for Businesses and Families and Delaying Plastic and Sugar Taxes," 2025. 10.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15_it_1.html, 검색일자: 2025. 11. 4.

68) IBFD, "Council of Ministers Confirms Tax Credits for Businesses and Families and Postponement of Plastic and Sugar Taxes in Draft Budget Law for 2026," 2025. 10.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21_it_1.html, 검색일자: 2025. 11. 4.

표 2 이탈리아 예산안 초안 주요 세제 조치

구분	내용	주요 목적 및 효과
① 개인소득세(IRPEF) 인하	제2소득 구간(28,000 ¹⁾ ~50,000 ²⁾ 유로 세율을 35%→33%로 인하 고소득층(200,000 ³⁾ 유로 초과)은 기존 35% 유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② 주택 개조 비용 세액공제 유지	첫 번째 거주지(prima casa)의 개보수·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 공제 유지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리모델링 산업 활성화
③ 경제상황지표(ISEE) ⁴⁾ 산정 규칙 검토	사회보장 수급 자격 판단 기준 합리화	복지정책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④ 생산성·혁신 관련 성과급 대체 세율 인하	성과급에 적용되는 대체 세율(the substitute tax rate) ⁵⁾ 5%→1%로 인하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혁신 투자 촉진
⑤ 특례 감가상각 제도	신규 투자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투자유형·금액별로 최대 220%까지 인정	기업의 설비·기술 투자 촉진, 세 부담 완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⑥ 투자 세액공제 확대	특별경제구역(ZES), ⁶⁾ 간소화물류구역(ZLS) ⁷⁾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지역균형 발전 및 물류 인프라 강화
⑦ 플라스틱세·설탕세 시행 연기	플라스틱세 및 설탕세 부과를 2027. 1. 1.로 연기	업체 부담 완화 및 공급망 조정 기간 확보

주

- 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65만원임
- 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31만원임
- 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327만원임
- 4) 이탈리아의 경제상황지표(SEE, Indicatore della Situazione Economica Equivalente)란 가구의 소득·자산·가족구성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경제적 여건 지표로, 복지급여·세제혜택·공공서비스 이용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됨
- 5) 대체 세율이란 기존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소득에 대해 대신 적용하는 별도의 단일 특례세율을 의미함
- 6) 특별경제구역(ZES, zona economica speciale)이란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 법률적 혜택을 제공한 지역을 의미함
- 7) 간소화 물류 구역(ZLS, zona logistica semplificata)이란 특정 지역에 투자, 물류, 통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경제·물류 구역을 의미함

출처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IBF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utlines Measures of 2026 Draft Budget Law, Confirming Tax Credits for Businesses and Families and Delaying Plastic and Sugar Taxes," 2025. 10.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15_it_1.html, 검색일자: 2025. 11. 4.
 2. IBFD, "Council of Ministers Confirms Tax Credits for Businesses and Families and Postponement of Plastic and Sugar Taxes in Draft Budget Law for 2026," 2025. 10.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21_it_1.html, 검색일자: 2025. 11. 4.



벨기에

유형자산 임대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제도 도입

- ◆ 벨기에 정부는 2025년 10월 21일, 산업·상업·과학용 설비의 임대·사용 대가에 부과되던 30%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확정함⁶⁹⁾
- 종전에는 장비·건설기계·선박 등 유형자산 임차료에 30%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었으며, 계약상 그로스업(gross-up) 조항이 포함될 경우 실제 비용이 약 43%까지 증가하는 부담이 있었음
- 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 비용 완화 및 행정 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하며, 「왕령」 제11조 및 제117조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면 면제를 허용함

69) IBFD, "Belgium Introduces General Exemption for Withholding Tax on Payments for Lease or Rent of Tangible Movable Property," 2025.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31_be_1.html, 검색일자: 2025. 11. 7.

- ◆ (주요 내용) 유형자산의 임대·임차·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고 경제적 실질이 있는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원천징수세 면제가 적용됨
- 면제대상은 사업상 사용되는 산업·상업·과학용 설비에 한정되며, 지식재산권(IP) 사용료는 제외됨
- 지급이 유효한 상업적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하며, 자산이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수취인이 비거주자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함
- ◆ (면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유형자산이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될 것
 - 지급이 상업적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갖춘 정상적 거래임이 입증될 것
 - 법인세 면제 대상 수취인이거나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이라도,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벨기에 세율의 절반 이상이면 '현저히 유리한 제도'로 보지 않음
 - 거래가 세제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 상업 목적에 기반할 것
 - 납세의무자는 일회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건 변경 시 갱신 의무가 있음
 - 인증서에는 사용자·수취인 신원, 자산 내역, 거래의 경제적 실질 확인 문서, 지급계좌 등 필수 정보 포함
- ◆ (인증절차 및 행정요건) 납세의무자는 면제 적용을 위한 심사를 위해 일회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서 제출 및 갱신 의무는 「소득세법(WiB 92)」 제307조 제1/2항 조세피난처 또는 비협력국 거래 보고 의무를 저해하지 않음
- 인증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자산 내역·지급계좌 등 상업적 정보에 한정됨
- 해당 정보는 국무회의 자문(2025. 9. 11.) 결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낮다고 평가받음
- 이상은 「소득세법」 제250조, 제300조 §1, 제312조에 근거한 행정 권한 범위 내에서 마련된 절차임
- ◆ (입법 취지 및 평가) 이번 제도 개정은 형식적 원천징수 부담을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벨기에 기업의 국제거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본 제도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과세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 거래의 세무상 장애요인 완화 및 과세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이 개정은 국제거래에서 형식적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벨기에 연방정부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행정 간소화 정책과도 일관됨
 - 이는 벨기에 연방정부 협약(Federal Government Agreement 2025-2029) 중 「경제(ECONOMIE) - 행정 부담 완화(administratieve lastenvermindering)」 정책 방향(56페이지)에 근거함
 - EU 조세중립 원칙 및 역내 기업 간 과세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유럽 내 유사제도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음



오스트리아

2025년 세법개정안 초안 공개

- ◆ 오스트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5년 10월 21일, 2025년 세법개정안(Abgabenänderungsgesetz 2025)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개시함⁷⁰⁾
- 이번 세법개정안은 EU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세무행정 절차의 간소화, 법적 명확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함
- 개정 범위는 소득세, 국제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5년 11월 초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은 11월 중 국회 제출 예정임
- ◆ (소득세) 개인소득세 측면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6년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물가연동 조정(inflation adjustment)을 도입하여, 실질적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불평등을 방지함
 - 기본 공제액(basic allowance)을 13,308유로⁷¹⁾에서 13,539유로⁷²⁾로 인상함
-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부양비공제, 근로자 교통공제, 연금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에도 물가연동 조정을 반영함
- ◆ (국제조세 및 정보교환) 국제조세 및 정보교환 측면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행정협력지침 제9차 개정(DAC9)을 국내법에 이행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보고체계 및 EU 회원국 간 자동정보교환체계를 마련함
 - GloBE 정보교환 다자간 권한당국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GIR MCAA)을 근거로, 해당 협정에 따른 국내 통보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다국적기업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제출한 GloBE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를 타국 과세당국과 교환할 수 있는 절차적 인프라를 확립함
 -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의 추가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70) IBFD, "MoF Issues Draft Tax Amendment Act 2025," 2025. 10.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0-21_at_1.html, 검색일자: 2025. 11. 6.

7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14만원임

7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53만원임

- 조세투명법인(fully transparent entity), 혼성 및 역혼성체(hybrid·reverse hybrid)의 정의 및 소득·세액 배분방식을 명확화함
- 이연법인세 관련 산정 규칙을 단순화하고, 재계산(recapture) 시 합산(agggregation)을 허용함으로써, 행정 부담 및 복잡성을 완화함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기반의 세이프하버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tative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세이프하버 요건을 정비함
- 비중요사업부문에 대한 간이계산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집단 내 소규모 해외법인에 대한 보고 부담을 경감함



덴마크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창작에 대한 세무안내 지침 발표

- ◆ 덴마크 세무청은 2025년 11월 3일, 인플루언서·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게이머·스트리머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창작자의 세금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세무안내 지침을 발표함⁷³⁾
- 이번 조치는 세무청 조사 결과, 창작자 10명 중 9명이 소득신고 오류를 범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세무당국은 전체 600여 명 중 14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700건 이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
- 세무청은 많은 인플루언서가 현금 외 보상(제품·할인·서비스 등)도 과세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유형별 신고 기준과 부가가치세(VAT) 등록 절차를 구체화한 디지털 가이드를 공개함
- ◆ 지침은 창작자의 소득활동 규모 및 지속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방식을 제시함
- 각 유형은 소득 성격·신고 항목·공제 범위가 상이하므로, 세무청은 창작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안내함
- ◆ 창작자의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및 공제 요건 또한 명확히 제시함
- 창작자의 연간 총수입이 50,000덴마크크로네(DKK)⁷⁴⁾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 외 보상(제품·ギフト카드·할인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의무가 발생함
- 덴마크 부가세율은 25%인데 매출세·매입세를 정기 신고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 가능함

73) IBFD, "Denmark Launches Guidance to Assist Content Creators, Influencers Estimate Correct Tax Dues," 2025. 11.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1-04_dk_1.html, 검색일자: 2025. 11. 6.

74)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17만원임

표 3 콘텐츠 창작자 유형별 과세 및 신고체계

구분	정의	신고 방식	주요 특징
단기 보수소득자 (Honorarmodtager)	단발성 콘텐츠 제작 대가를 받는 개인	연간소득신고서 Box 15, 예비신고 Field 207	세전 B-소득, 자진납세 의무 발생함
사업자 (Selvstændig erhvervsdrivende)	창작활동이 주업이며 영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간소득신고서 Box 111, 예비신고 Field 221	경비공제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적용됨
취미성 사업자 (Hobbyvirksomhed)	경제적 이익보다 취미활동 성격이 우세한 경우	연간소득신고서 Box 20, 예비신고 Field 250	AM기여금 면제, 순이익만 과세됨

출처 Danish Tax Agency, "Sådan skal du betale skat af dine indtægter fra sociale medier og online-platforme," 2025. 11. 3., <https://skat.dk/borger/skat-af-indtaegter-fra-sociale-medier-og-online-platforme/skat-for-content-creators>, 검색일자: 2025. 11. 6.

- 공제 가능 항목은 카메라·조명·편집 소프트웨어·회계 서비스 등 업무필수 비용이며, 의류·가정용 비품 등 사적 소비 성격 지출은 공제 불가함
- ◆ 후원금·기부·현물 수취 등 신중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구체화함
- 후원금·팁은 대가성이 없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 비과세이나, 콘텐츠 제공 등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과세대상임
- 현물 제공·제품 수취·기프트카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상은 과세대상이며, 적정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함
- 모든 창작자는 수입 및 비용 관련 증빙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거래내역·금액·제공자·수령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 ◆ 본 지침은 디지털 창작경제 내 신흥 직업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원포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 세무청이 창작자 유형별로 세무지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진신고 유도과 납세순응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OnlyFans·Twitch 등 글로벌 플랫폼 기반 창작자에 대한 EU 내 공동 세무행정 기준 마련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핀란드

해외 연금보험기관의 배당금 과세 관련 지침 개정 발표

- ◆ 핀란드 세무당국은 2025년 10월 30일, 외국의 법정연금보험기관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 방식과 공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갱신 지침(VH/2466/00.01.00/2025)을 발표함⁷⁵⁾
- 본 지침은 EU 기능조약(TFEU) 제63조의 자본 이동의 자유원칙과 Commission v. Finland(C-342/10)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JC) 판결을 반영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비거주자소득 과세법(627/1978)」 및 「법인소득세법(306/1968)」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⁷⁶⁾
- 핀란드 「법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보충연금기금 등은 연금급여 지급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본 지침은 이러한 공제를 외국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을 구체화함
- ◆ (외국 연금보험기관의 공제 요건) 외국 기관이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핀란드 기관과 동일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배당이 발생한 주식이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
 - 활동 목적이 법정연금 및 고용연계 보충연금 계약 제공으로 한정될 것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거주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제 제도를 보유할 것
 - 핀란드와 동일 수준의 공적 감독을 받을 것
- ◆ EEA 외 국가 기관은 위 요건 외에 배당 지급법인의 지분을 10% 미만만 직접 보유해야 하며, 핀란드와 해당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등)이 체결되어 있고 과세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⁷⁷⁾

표 4 보험부채 증가에 따른 공제액 계산 예시

(공제액 = 보험부채 증가액 × 핀란드 배당금 ÷ 총매출액)

구분	사례1: 보험부채 증가 시	사례2: 보험부채 감소 시
총 매출액	300,000	300,000
핀란드 배당금	1,000	1,000
부채 변동액	+10,000	-10,000
공제 가능금액	33.33	0
과세대상 배당금	966.67	1,000

주 보험 부채가 증가하면 해당 증가액 중 핀란드 배당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반대로 부채가 감소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출처 핀란드 세무당국, "Taxation of dividends received by foreign entities offering statutory pension insurance," 2025. 10. 30., <https://www.vero.fi/en/detailed-guidance/guidance/48570/taxation-of-dividends-received-by-foreign-entities-offering-statutory-pension-insurance/>, 검색일자: 2025. 11. 6.

75) IBFD, "Tax Administration Publishes Updated Guidance on Dividends Received by Foreign Entities Offering Statutory Pension Insurance," 2025. 1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1-05_fi_1.html, 검색일자: 2025. 11. 6.

76) 핀란드 세무당국, "Taxation of dividends received by foreign entities offering statutory pension insurance," 2025. 10. 30., <https://www.vero.fi/en/detailed-guidance/guidance/48570/taxation-of-dividends-received-by-foreign-entities-offering-statutory-pension-insurance/>, 검색일자: 2025. 11. 6.

77) 상동

- ◆ (공제대상 금액 산정 방식) 외국 기관은 공제대상 금액 산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핀란드 원천배당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야 함
- 이는 국내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지침은 구체적 계산 예시를 제시함
- ◆ (환급 절차) 초과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서만 환급됨
- 배당 지급 시점에는 공제 요건을 즉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환급 방식이 일반적임
- 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
- ◆ 본 지침은 EU 역내 비차별 과세 원칙을 반영해, 핀란드 및 외국 연금보험기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후속조치로 평가됨
- 비EEA 국가 기관에 대한 10% 미만 지분 요건은 역외 펀드의 세원유출 방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급절차 중심의 과세구조는 실무상 과세 형평성 확보와 행정적 부담 간의 균형을 요구함



중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초안) 의견 수렴

-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STA)은 2025년 8월 11일 중국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함^{79) 80) 81) 82)}
- 국무원의 2025년도 입법계획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초안은 총칙, 세율, 과세표준, 세금우대, 징수관리, 부칙 등 6장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며, 국무원에 위임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함
-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8)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증치세(增値稅)라고 하며 국가세무총국이 징수관리(수입단계의 증치세는 해관)하며 취득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향유하는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임

79) KPMG, 「中华人民共和国增値稅法实施条例(征求意见稿)要点解读」,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cn/pdf/zh/2025/08/china-tax-alert-6.pdf>, 검색일자: 2025. 11. 10.

80) PWC, "The Draft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of the Value-Added Tax Law is officially released for public consultation, with many key points worthy of attention," 2025. 8., <https://www.pwccn.com/en/china-tax-news/2025q3/chinatax-news-aug2025-10.pdf>, 검색일자: 2025. 11. 10.

81) 「中华人民共和国增値稅法」(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2024. 12. 공포, 2026. 1. 1. 시행 예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11. 10.

82) 「中华人民共和国增値稅法实施条例(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6/n810961/c5242227/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11. 10.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의견수렴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함
 - (국내소비의 세부규정)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4 조는 서비스·무형자산의 국내소비 세부규정을 명시함
 - (혼합판매 적용규칙)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10 조는 혼합판매에서 주된 사업의 세율·징수율을 적용받는 과세거래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은 혼합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거래 안에 서비스와 재화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하나의 과세거래에 둘 이상의 세율·징수율이 존재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적용 세율을 결정할 때는 그 거래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매액 산정방식)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18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세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매출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 (불공제 항목)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는 각각 대출 이자 관련 불공제, 비과세 거래 관련 불공제, 구분 불가능한 세액의 연도별 정산 규정을 명시함
 - (장기자산 관련규칙)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26 조는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장기자산(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 등)의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명시함
 - (타 사업용 전용) 일반과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 전액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사업, 면세사업, 비과세 거래, 복리후생, 개인소비 등에 전용되는 경우 공제 불가함
 - (공제 불가항목 겸용) 일반과세사업과 공제 불가항목을 겸용하는 경우 원가 500만원⁸⁴⁾ 이하의 단일 자산은 전액 공제 가능하나, 원가 500만원⁸⁵⁾ 초과 자산은 취득 시 전액 공제하되 이후 혼합용도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 또는 상각 연한에 따라 매년 공제 불가분을 계산·조정해야 함
 - (용도 변경 발생 시) 장기자산이 '공제 가능사업'과 '공제 불가사업' 사이에 용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시점의 기초순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불공제액을 재산정함
 - (세금우대 관련규칙) 시행규칙 의견수렴안 제28 조, 제35조, 제37조, 제48조, 제51~52조는 각각 법정 면세 기준, 세금우대의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 대리납부의무, 예납세금의 범위, 수출 환급신청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83) 중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세율이 존재하는 복수세율 구조로 되어 있음

84) 2025년 1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2,177만원임

85) 2025년 1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2,177만원임



싱가포르

2024년도 법인세의 정시 신고율 90% 이상 달성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5년 10월 16일, 평가연도 (Year of Assessment)⁸⁶⁾ 2024년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신고 준수율(filing compliance)이 90.4%로 최고치를 기록함⁸⁷⁾ 88)
- (준수율 제고 요인) 이는 2023년도의 88.9%에서 증가한 수치로 약 14,000개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마감일 내에 신고한 데에 힘입은 결과임
 - 국세청은 신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신고 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신규 기업의 법인세 신고 등 세무 관련 문제 지원, 간소화 신고를 위한 디지털 자료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 (신고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하는 소수의 기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벌금(penalties):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⁸⁹⁾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싱가포르달러⁹⁰⁾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은 2024년 및 이전 연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약 4,500건의 법원 소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세금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대한 벌금으로 총 340만싱가포르달러⁹¹⁾를 징수한 바 있음
- (신규 기업의 법인세 신고 지원) 올해는 37,000개 이상의 기업이 처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며, 2023~2024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2025년 신고 요건에 유의가 필요함
 - (2023년 설립 기업) 2024년에 첫 번째 회계 결산을 한 경우 반드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24년 설립 기업) 2024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첫 번째 회계 결산을 한 경우 반드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은 이러한 첫 신고 기업을 돕기 위해 기록 보관 의무, 세액 계산 준비부터 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신고 후 의무에 이르기까지 세금 신고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고 있음

86)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고 부과되는 연도를 말함

87)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Corporate Income Tax Season: More Than 90% On-Time Filing Rate Achieved for First Time in YA 2024," 2025. 10. 16., <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corporate-income-tax-season-more-than-90-on-time-filing-rate-achieved-for-first-time-in-ya-2024>, 검색일자: 2025. 11. 6.

88)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5만원임

89)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원임

90)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5만원임

91)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억 7,400만원임

- (간소화 신고를 위한 디지털 지원) 국세청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과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간소화된 양식) 기업은 연간 매출 및 기타 자격 조건에 따라 Form C-S, Form C-S(Lite), 휴면 회사용 양식(Form for Dormant Company)과 같은 간소화된 옵션을 사용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 Form C-S: 회계연도 2024년의 매출이 500만싱가포르달러⁹²⁾ 이하이고 17%의 법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earned income)만 있으며, 특정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
 - ▶ Form C-S(Lite)(필수 항목 6개로만 구성): 회계연도 2024년의 수익이 20만싱가포르달러⁹³⁾ 이하인 기업
 - ▶ 휴면 회사용 양식(필수 항목 2개로만 구성): 회계연도 2024년에 사업 활동이 없고 소득이 없었던 회사
- (디지털 자료 제공) 국세청은 기업이 법인세 의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기본 법인세 계산기(Basic Corporate Income Tax Calculator, BTC): 명확한 설명과 함께 세액 계산 및 명세서 준비 과정을 안내하는 엑셀 기반 도구
 - ▶ 기록 보관 체크리스트(Record Keeping Checklist): 기업이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금융 거래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운로드 가능한 체크리스트
 - ▶ e-러닝 비디오(E-Learning Videos): 신고 의무 및 과세 기준, 소득의 과세 여부, 사업경비의 공제 가능 여부와 같은 중요한 세금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를 포함함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적시 제출을 위하여, 기업에 10월까지 준비를 마칠 것과 11월 중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함

92)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억 5,000만원임

93) 2025년 11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200만원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2026년 EU 예산에 합의 (2025. 11. 15.)¹⁾
 - (주요 경과) 2026년 EU 예산안에 대한 EU 이사회와 유럽议회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조정 절차(10. 28.~11. 17.)를 거쳐 EU 이사회와 유럽议회의 합의안을 마련²⁾³⁾
 - ▶ (예산 규모) EU 이사회와 유럽议회가 합의한 2026년 예산안의 규모⁴⁾는 승인기준 1,928억유로, 지급기준 1,901억유로임
 - ▶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의 지출 한도 내에서 7억 1,570만유로의 마진(Margin)⁵⁾을 확보
 - ▶ 당초 집행위원회 예산안 대비 Horizon Europe 2,000만유로, 교통·에너지 네트워크 2,350만유로, 유럽농업보증기금의 유럽 농산물 홍보 조치 1억 500만유로, 군 기동력 관련 예산 1,000만유로, 인도주의적 지원 3,500만유로 등을 증액
- (EU 이사회와 유럽议회의 합의안) 2026년 EU 예산은 EU의 경쟁력 강화, 유럽의 방위 태세 강화, 인도적 지원 제공, 이민 문제 대응 등 EU의 우선순위 이행과 주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2026 annual budget, funding Europe's core priorities," 2025. 11.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694, 검색일자: 2025. 11. 21.
EU 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agreement on the 2026 EU annual budget," 2025. 11.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2695, 검색일자: 2025. 11. 21.

2)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6: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5. 11.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15/eu-budget-for-2026-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5. 11. 21.
유럽의회, "2026 EU budget deal: EP boosts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2025. 11. 15.,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1110IPR31345/2026-eu-budget-deal-ep-boosts-research-competitiveness-and-security>, 검색일자: 2025. 11. 21.

3)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5년 6월, 「재정동향」 2025년 7월, 「재정동향」 2025년 10월과 관련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 바람

4) 예산 금액은 승인(commitments)기준과 지급(payments)기준으로 제시됨. 승인기준은 미래의 지급을 위해 해당 연도에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의무의 총금액을 의미함.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또는 과거에 체결된 법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임. 지급기준 예산은 승인기준 예산과 같은 해에 집행될 수도 있고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이후 다수 해에 걸쳐 집행될 수 있음

5) 마진(Margin)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연간 한도와 각 세출 분야(heading)에 계획된 지출 간 차이

표 1 예산 확정 과정의 2026년 EU 예산 규모 변화

(단위: 백만유로)

구분	집행위원회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의회 입장 (C)	이사회-의회 조정안 (D)	차이		
					(D-A)	(D-B)	(D-C)
승인기준 예산	193,262.0 (192,875.9)	191,954.6	193,859.8	192,768.1	-494.0 (-107.8)	813.5	-1,091.8
자급기준 예산	192,206.9 (190,318.1)	191,510.2	192,571.6	190,091.6	-2,115.3 (-226.5)	-1,418.6	-2,480.1

주 집행위원회 예산안 괄호 안의 규모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안 수정 서한(2025. 10.)을 반영한 수치임

출처 EU 이사회, "Joint text on the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6: Summary tables: Figures by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heading - Figures by programme - Authorised establishment plans by Section," 2025. 11. 20.,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87-2025-ADD-1/en/pdf>, 검색일자: 2025. 11. 26.

- (주요 내용) 2026년 EU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주의 지원 및 EU 인근 지역 지원 정책 강화, 안보 및 국방 예산 등이 포함되며 EU의 다양한 우선순위에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배정함(이하 예산액은 승인기준 예산임)
-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Horizon Europe⁶⁾에 130억 유로, 유럽의 전략적 투자에 46억유로(유럽연결기금⁷⁾ 30억유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⁸⁾ 10억유로), 유럽 우주 프로그램에 24억유로, 단일시장 기능 보장에 10억유로 등 지원
- ▶ (결속, 회복력 및 가치) 지역개발 및 결속에 421억유로, 유럽사회기금플러스⁹⁾에 145억유로, Erasmus+¹⁰⁾에 43억유로, 예술가와 창작자 지원에 3억 9,700만유로 등 지원
- ▶ (천연자원 및 환경) 환경 및 기후행동에 22억유로, 공동 농업 정책에 533억유로, 유럽해양양식기금에 8억유로 지원
- ▶ (이주 및 국경관리) 이민 관련 지출에 23억유로, 국경 관리에 27억유로 지원
- ▶ (안보 및 국방)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의 방위력 개발 및 연구 지원 10억유로, 유럽 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P) 6.2억유로, 군 기동력 지원에 2.6억유로 등 국방 관련 대응에 20억유로 배정
- ▶ (파트너 및 세계) 인접국 지원·개발 원조·국제협력¹¹⁾에 102억유로, 인도주의적 지원 20억유로 등
- ▶ (기타 특수 기금) 우크라이나 기금의 추가 보조금 39억 유로 등

6) Horizon Europe: EU의 주요 연구·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

7) Connecting Europe Facility: 운송,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EU 국가 간 상호 연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8) Digital Europe Programme: 유럽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첨단 디지털 기술 등의 분야에 자금 지원

9) European Social Fund Plus(ESF+): 유럽의 고용, 사회, 교육, 숙련 정책 관련 지원 프로그램

10) Erasmus+: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1) Global Europ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표 2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 합의한 2026년 EU 예산 개요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금액	지급기준 금액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2,163.0	23,336.6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1,649.8	73,166.7
3. 천연자원 및 환경	56,529.4	52,577.3
4. 이주 및 국경 관리	5,018.9	3,887.9
5. 안보 및 국방	2,813.5	2,253.3
6. 파트너 및 세계	15,600.0	16,569.7
7. 유럽 공공 행정	13,277.5	13,277.5
8. 기타 특수 기금	5,715.9	5,022.5
합계	192,768.1	190,091.6
(EU GNI 대비 %)	1.00	0.99

출처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6: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5. 11.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15/eu-budget-for-2026-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5. 11. 21.

- ▶ (후속 절차)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의 공식 채택(11. 24.), 유럽의회 의 공식 승인(11. 26.)을 통해 2026년 EU 예산을 최종 확정함
- ◆ EU 집행위원회, 2025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5. 11. 17.)¹²⁾
 - (경제성장률) 2025년과 2026년에 EU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각각 1.4%, 2027년에는 1.5% 소폭 상승이 전망되고, 유로지역은 2025년 1.3%, 2026년 1.2%, 2027년 1.4%로 전망
 - (노동)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2026년에 고용 증가율은 각각 0.5%로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며, 2027년에는 0.4%로 둔화될 전망
 - (물가) 유로지역의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EU 2025년 2.5%, 2026년 2.1%, 2027년 2.2%)
 - (재정) EU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방위비·이자지출 증가, 일부 국가의 세수 부진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무 역시 적자 증가와 GDP 상승률보다 높은 이자 비용 증가로 상승 전망
 - (EU) EU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24년 3.1%에서 2025년 3.3%, 2026년 3.4%, 2027년 3.4%로 증가할 전망
 - (재정기조) EU와 유로지역 모두 재정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국별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12)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5 Economic Forecast shows continued growth despite challenging environment," 2025. 11. 1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5-economic-forecast-shows-continued-growth-despite-challenging-environment_en, 검색일자: 2025. 11. 19.

- (채무) EU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82%에서 2027년 85%로 상승할 전망이며, 유로지역은 같은 기간 88%에서 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위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위험이 우세함
- (하방 위험) 무역 정책 불확실성, 관세 관련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긴장, 최근 유로화 강세, 기후 관련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등이 경제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방 위험) 구조개혁·경쟁력 강화 정책의 진전, EU 방위산업 생산 확대, 제3국과의 신규 무역협정 체결 등이 앞당겨지면 경제 흐름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음
- ◆ EU 집행위원회, 2025년 European Semester 가을패키지에서 회원국의 EU 재정준칙 준수 평가 발표 (2025. 11. 25.)¹³⁾
- 2026년 예산안 및 재정 평가 EU 회원국이 순지출 경로를 준수하는지 평가함
- (평가 방법) 모든 EU 회원국에 이사회가 권고한 순지출 최대 증가율로부터의 편차를 연간 및 누적 기준으로 기록하여, 그 편차의 규모를 연간 기준 GDP의 0.3%, 누적 기준 GDP의 0.6%라는 임계값에 비추어 판단함
- (평가 결과) 27개 전체 EU 국가 중 '준수'인 19개국은 2026년에도 계획대로 재정정책을 계속 이행할 것을 권고받고, '비준수 위험'이 있는 8개국은 2026년 재정정책이 이사회 권고에 부합하도록 지출 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음 (〈표 3〉 참조)
- (유로지역) 14개 회원국의 순지출 증가율이 이사회가 권고한 상한 이내에 있어 '준수'로 평가받았으며, 4개 회원국은 편차가 이 임계값보다 낮아 '비준수 위험', 2개 회원국은 임계값을 초과하여 '중대한 비준수 위험'으로 판단함
- (향후 평가) 2026년 봄 패키지에서 순지출 경로와의 편차를 나타내는 통제계정과 회원국이 2026년 4월 30일까지 EU 집행위에 제출하는 연례 이행보고서 등을 평가할 예정

13)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communication assessing national fiscal policies," 2025. 11. 2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communication-assessing-national-fiscal-policies_en, 검색일자: 2025. 11. 26.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outlines priorities to boost EU competitiveness in its 2026 European Semester Autumn Package," 2025. 11. 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760, 검색일자: 2025. 11. 26.

14)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점검 활동

표 3 2025년 및 2026년 EU 이사회 권고안 대비 회원국 순지출 증가율의 연간 및 누적 편차

(단위: GDP 대비 %)

구분	유로지역 20개국 여부 ²⁾	연간 편차 (Annual deviation)		누적 편차 (Cumulated deviation)		국가면책 조항 (NEC) ¹⁾ 적용	NEC 기준 연도	NEC 유연성을 고려한 누적 편차		준칙준수평가 ²⁾
		2025	2026	2025	2026			2025	2026	
[예산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한 회원국]										
독일	○	-0.3	0.3	-0.3	0.0	○	2021	-0.8	-0.7	준수
에스토니아	○	-2.7	2.9	-2.0	1.0	○	2021	-3.5	-0.5	준수
아일랜드	○	0.5	-0.1	0.2	0.1	×	-	-	-	준수
그리스	○	0.0	1.2	-1.0	0.2	○	2024	-1.2	-0.1	준수
프랑스	○	0.1	-0.3	-0.2	-0.4	×	-	-	-	준수
크로아티아	○	1.3	0.3	0.8	1.1	○	2021	0.3	0.5	비준수 위험
이탈리아	○	-0.1	0.0	-0.2	-0.2	×	-	-	-	준수
사이프러스	○	0.3	0.5	-0.1	0.5	×	-	-	-	준수
라트비아	○	0.3	0.7	-1.2	-0.5	○	2021	-2.0	-2.0	준수
리투아니아	○	1.1	0.8	1.1	1.8	○	2021	-0.4	0.3	비준수 위험
룩셈부르크	○	0.5	-0.2	-0.3	-0.4	×	-	-	-	준수
몰타	○	-0.5	-0.4	2.0	1.5	×	-	-	-	중대한 비준수 위험
네덜란드	○	1.5	0.5	1.3	1.7	×	-	-	-	중대한 비준수 위험
포르투갈	○	0.3	0.0	0.8	0.7	○	2021	0.7	0.7	준수
슬로베니아	○	1.0	0.6	0.2	0.8	○	2021	0.0	0.2	비준수 위험
슬로바키아	○	-0.5	0.3	-1.4	-1.0	○	2021	-2.3	-1.5	준수
핀란드	○	-0.2	-0.1	-0.4	-0.5	○	2021	-2.0	-2.4	준수
[초과적자시정절차(EDP) 대상 회원국 중 예산안 미제출국]										
벨기에	○	0.3	0.2	0.3	0.5	○	2021	-0.2	-0.3	준수
헝가리	×	1.3	1.3	0.6	1.9	○	2021	-0.5	0.5	비준수 위험
오스트리아	○	-0.2	0.0	-0.2	-0.2	×	-	-	-	준수
폴란드	×	0.3	-0.1	0.6	0.5	○	2021	-0.9	-1.0	준수
루마니아	×	0.1	-1.0	0.1	-0.9	×	-	-	-	준수
[기타 회원국]										
불가리아	×	1.3	-0.5	1.3	0.7	○	2024	0.1	0.2	비준수 위험
체코	×	-0.5	1.0	-2.1	-1.0	○	2021	-2.5	-1.5	준수
덴마크	×	2.1	0.5	0.4	0.8	○	2021	-1.1	-0.7	준수
스페인	○	0.3	0.3	-0.1	0.2	×	-	-	-	비준수 위험
스웨덴	×	-1.0	0.9	-1.0	-0.1	×	-	-	-	준수

주 1) 국가면책조항(National escape clause(NEC))

2) 원본 표에서 열 추가(저자 주)

1. 양(+의 편차는 순지출이 권고안을 초과함을 의미)

2. EU 집행회 2025 가을 경제전망(2025 Autumn Forecast)에 기초한 집행위 산출

3. 초과적자시정절차 적용 중인 국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함(저자 주)

출처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communication assessing national fiscal policies," Annex 1. p. 12, 2025. 11. 2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commission-communication-assessing-national-fiscal-policies_en, 검색일자: 2025. 11. 26.



IMF

- ◆ IMF 이사회, 한국과의 연례협의14 결과 발표(2025. 11. 24.)^{15) 16)}
 - (현황) 장기간 지속된 국내 정치 및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단기 성장을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융안정성 위험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임
 - (전망) 2025년 성장률은 0.9%로 전망되며, 2025년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26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전체적인 영향, 거저효과(base effects)에 힘입어 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근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장기적인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 국내 반도체 산업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
 - (정책권고) IMF 이사회는 국가의 견고한 거시경제 기초와 당국의 능숙한 정책 관리로 국내 및 외부 충격 속에서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함. 다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국내 수요 활성화, 외부 회복력 강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
 - (통화정책) 국내 수요를 지원하는 현행 통화 정책 완화에 동의하면서도 물가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첩하게 대응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
 - (재정정책) 마이너스 아웃풋 갭을 고려하여 현행 재정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 압력을 고려하여,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면 재정 긴축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
 - (금융 안정성 및 부동산 시장 대응) 금융부문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부문의 금융 취약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당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
 - (국내외 수요 취약성 대응) 비정규직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혁신적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수출 다각화를 권고
 - (구조적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해소, 규제 간소화, 혁신 지속, 인공지능 활용 등을 권고하였으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15)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2025. 11. 24.,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11/21/pr-25385-republic-of-kore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11. 25.

16) IMF, "Republic of Kore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2025. 11. 24., <https://doi.org/10.5089/9798229029063.002>, 검색일자: 2025. 11. 25.

표 4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 증가율(연평균)	1.6	2.0	0.9	1.8
실업률	2.7	2.8	3.0	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연평균)	3.6	2.3	2.0	1.8
종합재정수지(Overall balance, GDP 대비 %)	-1.5	-1.7	-2.4	-2.3
일반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debt, GDP 대비 %)	50.5	49.8	53.4	56.7
경상수지(GDP 대비 %)	1.8	5.3	4.8	3.9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8,582.70			

- 주 1. 2025, 2026년은 예측치
- 2. 쿼터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11. 24., Table 1, Table 2에서 발췌



OECD

- ◆ OECD, 2025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5. 11. 10.)¹⁷⁾
 - 프랑스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1분기 0.0%에서 2분기 0.3%로 증가하였으며, 미국(0.5%에서 0.6%)과 캐나다(0.1%에서 0.2%)에서도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이 소폭 상승
 - 이탈리아는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이 1분기 0.8%에서 2분기 0.3%로 둔화되었는데, 주로 피고용자 보수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다른 OECD 회원국 중 폴란드는 인플레이션 하락, 사회 수혜 증가, 순 재산 소득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3.1%)을 기록했으며, 칠레와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감소(둘 다 -0.6%)를 보임
- OECD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2025년 2분기에 0.4% 증가했으며, 이전 분기에 0.1% 성장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여 가속화된 모습을 보임
-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가속화는 대다수 OECD 회원국의 강한 성장을 반영함
- G7 국가 대부분이 2025년 2분기에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
- 독일과 영국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각각 -0.5%와 -0.8%)에서 반등하여 0.3%를 기록

17)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Second quarter 2025," 2025. 11. 10.,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11/growth-and-economic-well-being-second-quarter-2025-oecd.html>, 검색일자: 2025. 11. 10.

표 5 1인당 분기 실질 가계소득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0.7	0.2	0.5	1.0	0.1	0.5	0.6	0.1	0.4
G7	0.6	0.1	0.4	0.8	0.5	0.3	0.3	0.2	0.5
캐나다	0.5	0.6	-0.5	-0.2	1.1	1.4	-0.3	0.1	0.2
프랑스	-0.3	0.4	0.8	0.7	0.5	0.9	0.0	0.0	0.3
독일	1.3	-0.8	0.0	1.0	0.2	0.5	-0.1	-0.5	0.3
이탈리아	0.2	0.6	0.3	0.2	0.7	0.3	-0.6	0.8	0.3
일본	0.1	0.4	-0.3	0.8
영국	0.9	-0.4	0.3	1.5	0.5	1.1	1.5	-0.8	0.3
미국	0.6	0.1	0.6	0.8	0.3	0.1	0.4	0.5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 은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아직 제공되지 않음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2nd quarter 2025," p. 3, Table1, 2025. 11. 10.

◆ OECD, 고품질 예산제도(Quality Budget Institutions) 보고서 발표(2025. 11. 14.)¹⁸⁾

※ 본 보고서는 OECD의 재정·예산제도 관련 특별 분석보고서로, OECD 회원국들의 최근 조사(2023년 예산제도·지출검토·성과예산 설문 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배경) OECD 회원국은 공공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및 국방, 보건, 사회복지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출 압력에 직면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재정관리가 필요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OECD 지출 개선 프레임워크(Spending Better Framework)의 10대 원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다룸

- (하향식 및 중기 예산 책정) 하향식(top-down) 통제를 통해 지출을 재정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고, 설정된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중기(3~5년) 정책비용을 파악하고, 부문별 자원 배분 계획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 ① 정부는 법률 및 행정 조치를 활용하여 예산균형, 공공부채, 총지출 등 예산 관련 핵심 요소들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야 함 ② 예산계획은 경제 및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성장 등 주요 변수 가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③ 예산결정은 기존 정책 유지에 따른 미래비용(지출 기준선)을 파악한 후 이루어져야 함 ④ 예산절차는 재정목표와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각 우선순위에 배분될 공공지출의 전반적인 범위를 합의해야 함

18) OECD, *Quality Budget Institutions: Development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2025. 11. 14., <https://doi.org/10.1787/8e811202-en>, 검색일자: 2025.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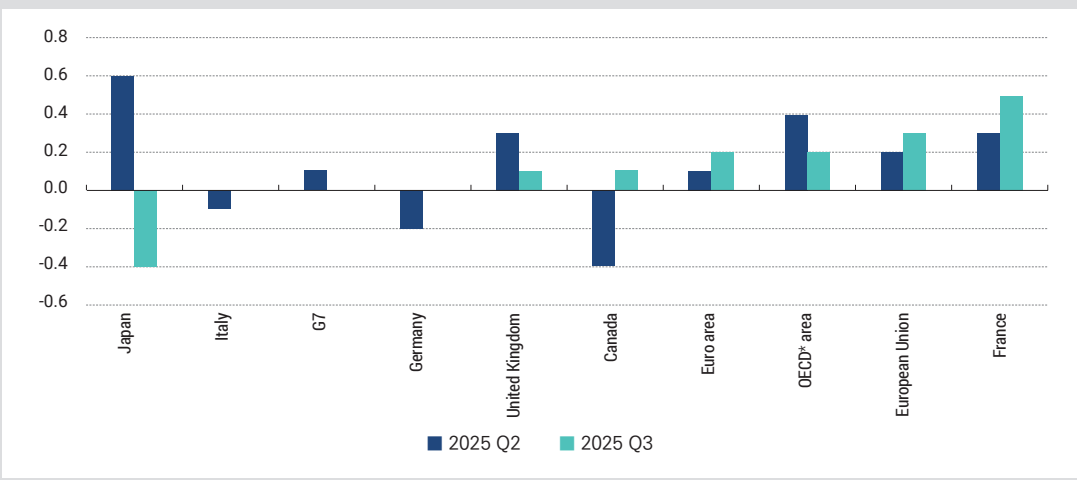
- (예산배분 및 재분배에 대한 정보 제공) 정부가 지출을 가장 효율적인 분야로 재할당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와 협력 방식을 다루고 있음
- ▶ ⑤ 지출검토(spending reviews)는 지출 재분배, 정부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조정, 총지출 통제를 위한 권고안에 활용되며, 효과적인 지출검토는 본질적으로 예산절차와 연계되어 있음 ⑥ OECD 회원국에서는 성과 및 결과 정보, 예산영향 분석, 공공정책 평가 등을 활용하여 정보에 기반한 지출 결정을 내리고, 지출 성과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⑦ 정부는 정보에 기반한 지출 결정 시 연간예산에서 승인된 세출, 상시 법규에서 승인된 지출(의무지출), 조세지출 등 모든 형태의 지출을 고려해야 함 ⑧ 예산 집행의 질을 높이려면 CBA가 개별 부처를 예산 과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개별 부처의 재정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투명성 및 예산 감독)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⑨ 모든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는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함.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예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하고 있음 ⑩ 의회는 정부지출을 적절히 검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 OECD,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11. 20.)¹⁹⁾
- 2025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0.2%(잠정 추정치)²⁰⁾로, 이는 이전 분기의 0.4%보다 둔화된 수치임
- GDP 성장률은 2025년 3분기 기준 데이터가 제공된 25개 OECD 회원국에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G7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프랑스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GDP 성장률이 0.3%에서 0.5%로 가속화되었음. 미국의 3분기 GDP 데이터는 본 자료의 발행 시점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음
 - 캐나다는 GDP 성장률이 3분기에 -0.4%에서 0.1%로 회복되었으며, 일본은 2분기 0.6% 성장 이후 3분기에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0.4%로 하락
 - 영국은 재고 조정이 계속되면서 2분기 0.3%에서 3분기 0.1%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2분기에 각각 -0.2%, -0.1% GDP 감소 이후 3분기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

19) OECD, "OECD GDP growth," 2025. 11. 20.,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11/gdp-growth-third-quarter-2025-oecd.html>, 검색일자: 2025. 11. 24.

20) OECD와 G7의 실질GDP 성장률 집계 시 미국을 제외함(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을 위해 전체 시계열에 대해 제외). 이는 본 발표의 마감일(2025. 11. 17.) 기준으로 미국의 2025년 3분기 GDP 데이터가 아직 이용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임. 미국의 명목 GDP는 2024년 OECD GDP의 34.1%를 차지하였음

그림 1 2025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 주 1. 전분기 대비 변화율, 계절조정 데이터
- 2. 캐나다의 경우 2025년 2분기 0%의 성장률을 기록
- 출처 OECD, "OECD GDP growth," 2025. 8. 27., p. 1, Figure1



미국

- ◆ 의회, 2026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안(H.R. 537121)이 최종 통과 의결됨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은 43일만에 종료(2025. 11. 12.)
- (배경) 2026회계연도 정규 예산안 및 임시 세출예산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회계연도가 개시되어,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
- (주요 진행상황) 양당의 정책적 대립으로 시작된 정부 셧다운은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 세출예산안

표결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되며 종료

- (임시 세출예산 주요 내용) 임시 세출예산안에는 1) 효력 기한, 2) 셧다운 관련 조치 사항, 3) 정규 세출분야 3개 법안 확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²²⁾은 포함되지 않음²³⁾
- 1) 임시 세출예산 효력 기한은 2026년 1월 30일 까지로 규정

21) P.L. 119-37

22) 셧다운 관련 추가적인 내용은 「재정동향」 2025년 10월호 참고

23) Time, "What to Know About the Deal to End the Shutdown," 2025. 11. 10., <https://time.com/7332434/shutdown-deal-eight-democrats-senate-continuing-resolution-house-republicans-trump/>, 검색일자: 2025. 11. 20.

- 2) 섰다운 관련 조치 사항은 크게 3개 항목으로
 - ① 섰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 ② 2025년 10월 1일 (FY2026 개시일)부터 본 법안 발효일까지 연방기관이 시행한 모든 정원 감축(RIF, Reduction in Force) 조치 무효화 ③ 이후 임시 세출 만료 시한까지 정원 감축 관련 조치 금지 등
- 3) ① 농업 ② 입법부 ③ 군사시설·재향군인²⁴⁾ 등 3개의 정규 세출 분야에 대한 법안 통과
 - (향후 일정) 의회에서 심의하는 세출예산 분야 총 12개 중 동 법안을 통해 3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향후 임시 세출예산안이 만료되는 2026년 1월 30일까지 나머지 9개 법안의 심의 의결 필요



일본

- ◆ 일본 내각부,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2025. 11. 21.)^{25) 26)}
 - (목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위기관리·성장 투자를 확대해 생활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득·소비·잠재성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재정건전화의 선순환 속에 전 국민이 체감하는 강한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고물가 대응, 경제·식량·에너지·자원 등 안전보장, 방위력·외교력 강화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
 - (고물가 대응·생활안전보장)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도록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 양육지원수당 지급, 전기가스요금 지원, 철저한 가격전가,²⁷⁾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지역산업·치안·교육을 강화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 제고, 중소기업의 수익력·노동절감 투자와 지방교부금 확충으로 임금인상 기반을 확충
 - (위기관리 투자·성장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실현) 전략산업 투자, 중요 물자 공급망,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재난 대응 고도화, 미래를 향한 투자 확대 등 경제안보와 성장기반 강화

24) 농업(Agriculture), 입법부(Legislative Branch), 군사시설·재향군인(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25) 일본 내각부, 「「強い経済」を実現する総合経済対策-日本と日本人の底力で不安を希望に変える-」, 2025. 11. 21.,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1121_taisaku.pdf, 검색일자: 2025. 11. 24.

26) 일본 내각부, 「「強い経済」を実現する総合経済対策-日本と日本人の底力で不安を希望に変える-」概要, 2025. 11. 21.,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1121_taisaku_gaiyo.pdf, 검색일자: 2025. 11. 24.

27) 가격전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와 민간의 도급계약 단가 재검토, 지방공공단체의 공공조달에서 노무비를 포함 등을 하는 것을 말함

- (방위력·외교력 강화) 방위력 정비, 자위대 처우를 강화하고 다각적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미일 투자 이니셔티브 이행과 관세 피해 기업(중소기업 등) 지원·탈탄소 자동차·농식품 수출 및 수입선 다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 (규모) 이번 경제대책 관련 재정 소요는 21.3조엔(재정투융자 4.2조엔 포함 시 25.5조엔), 총사업 규모는 42.8조엔으로 예상
- (경제효과)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실질GDP 약 24조엔(연 성장률 환산 시 약 1.4%, 향후 3년간 효과가 발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순 평균)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망되며, 휘발유세의 잠정세율 폐지²⁸⁾로 인해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0.3%p 완화될 전망



독일

- ◆ 독일 연방 통계청, 2025년 3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 (2025. 11. 18.)²⁹⁾
 - 독일의 2025년 3분기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4,596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3분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0.6%, 0.5% 증가
- ◆ 독일 연방 통계청, 2025년 3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5. 11. 25.)³⁰⁾
 - (전분기 대비) 독일의 2025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0% 증가
 - 전분기 대비 정부소비는 0.8%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는 0.3% 감소
 - 전분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장비에서 1.1% 증가, 건설에서 0.5%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독일의 2025년 3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정부소비는 1.7%, 민간소비는 0.8% 증가
 - 장비투자 -1.0%, 건설투자 -0.7% 등 전년 동기 대비 투자 흐름은 약세

28) 휘발유세는 본칙세율(1리터당 28.7엔)과 잠정세율(1리터당 25.1엔)을 합인 특례세율(1리터당 53.8엔)이 과세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잠정세율이 폐지(출처: 일본 국세청, 揮発油価格高騰時における揮発油税及び地方揮発油税の特例税率の適用停止等について, 2011. 4., 검색일자: 2025. 11. 28.)

29)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keit im 3. Quartal 2025 leicht rückläufig," 2025. 11.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11/PD25_410_13321.html, 검색일자: 2025. 11. 20.

30)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5," 2025. 11.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11/PD25_418_811.html?nn=2110, 검색일자: 2025. 11. 26.



프랑스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주권부, 2025년 예산종료법안 (PLFG 2025)³¹⁾ 발표 (2025. 11. 10.)³²⁾

* 예산종료법(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LFG)은 2021년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법의 범주로, 회계연도 내 국가 우선순위에 맞추어 이루어진 사업예산의 변경(예산 취소, 전용, 이전, 예비비 사용 등)을 예산법(LFI)상 총량에 맞추어 사후 정산 및 회계적 반영을 할 조정 허용범위는 중앙정부 단위의 지출 및 수입의 집행상의 조정까지이며 세제 관련 입법은 불가

- (경제전망)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주요기관 전망과 유사한 0.7%로 추정되며, 경제성장은 상반기는 재고 변동, 하반기는 수출 회복과 가계 서비스 소비 확대에 기인
- (재정전망) 2025년 예산법(LFI 2025)과 비교한 2025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4%로 동일하며, 규모는 80억유로 개선된 1,310억유로로 전망
- (재정지출) 세출은 2025년 예산법 대비 44억유로 감소한 4,345억유로로 전망되며, 감소세는 이자 지출 감소와 연중 지출 취소에 기인
- (재정수입) 2025년 예산법 대비 조세수입은 38억유로 증가한 3,534억유로, 세외수입은 25억유로 증가한 235억유로에 상응

- ▶ 조세수입의 증가는 과세소득(BFI) 추정치 상황에 의한 법인세수 증가 및 에너지제품 소비세의 국가 귀속분 상향조정으로 인한 기타 세입 증가에 기인
- ▶ 세외수입의 증가는 벌금 및 과태료 납부금 증가에 의한 영향임
- 국가지출범위(PDE)는 2025년 예산법 전망 4,878억유로에 비해 3억유로 증가한 4,882억유로로 전망
- (예산 변동) 초기 승인된 지출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 내 조정(지출 취소 및 유보액 활용 등)으로 30억유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지출 사용처 변경
- (예산 취소) 국가지출범위 내외로 다부문에 걸쳐 예산이 취소되며 주로 예비비 부문이 해당
- (범위 내) 프랑스 2030을 위한 투자 16억유로, 노동, 고용 및 사회부처 행정 8억유로, 연구 및 고등교육 2.5억유로, 경제 1.8억유로 등 여러 미션에 걸쳐 취소
- (범위 외) '환급 및 감면' 미션에서 32억유로 감소, '국가 부채 부담 및 재정' 프로그램에서 단기금리 하락에 의한 채무상환 금액의 조정으로 29억유로 감소

31)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32)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5(PLFG 2025)," 2025. 11. 10.,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_de_finances/articles/plfg-2025, 검색일자: 2025. 11. 17.



영국

- ◆ 영국 재무부, 2025 예산안(Budget 2025) 발표 (2025. 11. 26.)³³⁾
 - (경제 전망) 지난 3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영국 경제는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중기 실질GDP 성장률이 약화되고, 단기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GDP는 전망기간(2025~2030년)에 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수치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5%로 상승한 후 2026년에는 2.5%로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는 3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4%p 상향 조정된 수치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2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7년까지 현재 수준인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26-27회계연도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1조 3,038억파운드(GDP 대비 41.2%), 총관리지출은 1조 4,159억파운드(GDP 대비 44.7%)로 전망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4.5%(1,383억파운드)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여 2030-31회계연도에는 1.9%(672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5-26회계연도 GDP 대비 95.0%에서 2028-29회계연도 97.0%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6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실질 GDP 성장률	1.1	1.5	1.4	1.5	1.5	1.5	1.5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5	3.5	2.5	2.0	2.0	2.0	2.0
실업률	4.3	4.8	4.9	4.6	4.3	4.2	4.1
고용자 수	33.6	34.2	34.3	34.6	34.9	35.1	35.4
고용률	60.4	60.7	60.6	60.7	60.7	60.7	60.7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성장률	3.0	0.5	0.3	0.2	0.3	0.3	0.4

주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성장률의 경우, 각 수치는 연도별 수치가 아닌 2024-25회계연도~2030-31회계연도의 수치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 11., p. 182, Table A.1

33) HM Treasury, "Budget 2025," Collection, 2025.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budget-2025>, 검색일자: 2025. 11. 27.; _____, "Strong foundations, secure future: a Budget that delivers on the country's priorities," 2025.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rong-foundations-secure-future-a-budget-that-delivers-on-the-countrys-priorities>, 검색일자: 2025. 12. 2.

- (주요 정책) 정부는 영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주요 정책을 추진
 - (생활비 절감)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가구당 평균 150파운드 할인하고, 30년 만의 철도요금 동결 및 유류세 임시 인하 5개월 추가 연장 등을 통해 통근자와 운전자 부담을 경감
 - (NHS 대기자 명단 축소 및 필수 공공서비스 보호) 공공투자를 줄이는 긴축정책(austerity)으로 돌아가지 않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공공투자를 유지
 - (채무 감축) 현재 공공지출 10파운드 중 1파운드가 채무 이자로 지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 재정준칙(fiscal rule)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명한 지출, 복지개혁, 공정한 세제를 통해 매년 차입을 줄여 재정여력(fiscal headroom)을 확대
 - (경제성장 가속화) 1,2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 확대, 국부기금(National Wealth Fund) 조성 등 기존 정책에 더해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
 - (공정한 세제 마련)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액(threshold) 동결을 연장하고, 재산세·배당세·저축소득세는 2%p 인상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간 세금 격차를 줄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공제도 마련
 - (복지개혁) 2026년 4월부터 '두 자녀 제한'(two-child limit)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 결정을 통해 45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제

표 7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실적	전망					
	2024~25년	2025~26년	2026~27년	2027~28년	2028~29년	2029~30년	2030~31년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1,138.6	1,231.5	1,303.8	1,370.3	1,420.7	1,483.3	1,539.4
GDP 대비(a)	38.9	40.5	41.2	41.8	41.9	42.3	42.4
총관리지출(TME) ¹⁾	1,288.1	1,369.8	1,415.9	1,468.7	1,507.6	1,551.2	1,606.6
GDP 대비(b)	44.0	45.0	44.7	44.8	44.5	44.3	44.3
공공부문 경상지출(c)	39.1	39.8	39.7	39.5	39.4	39.3	39.3
공공부문 순투자(d)	2.5	2.8	2.6	2.9	2.7	2.6	2.5
감가상각(e)	2.4	2.4	2.4	2.4	2.5	2.5	2.5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5.1	4.5	3.5	3.0	2.6	1.9	1.9
경기조정 순차입	4.9	4.2	3.2	2.8	2.5	1.9	1.8
경상재정수지 적자(c+e-a)	2.6	1.7	0.9	0.1	-0.1	-0.6	-0.7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 ²⁾	93.6	95.0	95.3	96.3	97.0	96.8	96.1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³⁾	81.3	83.1	83.3	83.6	83.7	83.0	82.2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공공부문 순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유동성 금융 자산

3) 공공부문 순금융 채무 = 일반정부 채무 + 기타 공공 채무 + 기타 부채 - 유동성 금융 자산 - 비유동성 금융 자산*

* 학자금 대출, 금융위기 동안 인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5, 2025. 11., p. 190, Table A.9, 재구성



호주

- ◆ 호주 중앙은행(RBA), 2025년 11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2025. 11. 4.)³⁴⁾
- (경제) 호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7%) 대비 상승한 2.0%로 전망되며, 이후 전망기간(~2027년) 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예상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이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다소 타이트한 상태임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중반까지 지난 8월 전망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7년 이후 중앙은행 목표범위(2~3%)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금리) 중앙은행 이사회는 2025년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3.60%를 동결하기로 결정
 - 이사회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중국

- ◆ 중국 인민은행, 2025년 제3차 통화정책이행보고서 발표(2025. 11. 11.)³⁵⁾
-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완화된 통화 정책을 운용
- (공개시장조작) 2025년 5월 지급준비율 0.5%p 인하로 1조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월 특정일에 역환매조건부채권(RRP)과 중기유동성지원채(MLF)를 발행하는 중장기 자금조달 모델 구축
 - 2025년 9월 말 광의통화(M2) 잔액은 335조 4천 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 (적정 이자율 유지) 2025년 9월 위안화의 대출우대금리(LPR)는 전년 대비 0.35%p, 외화의 경우 3개월 미만 만기 및 3~6개월 만기 달러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가 전년 대비 1.01%p와 1.08%p 하락
- (구조적 통화 정책) 6,691억위안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채권을 발행하고, 녹색 대출이 전년 대비 22.9% 증가

34)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November 2025," 2025. 11. 4.,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nov/>, 검색일자: 2025. 11. 21.

35)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2025年第三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2025. 11. 11., <http://www.pbc.gov.cn/zhengcehuobisi/125207/125227/125957/5706274/5896222/index.html>, 검색일자: 2025. 11. 24.

- (안정적 환율 유지) 2025년 9월 말 기준 미국 달러
에 대한 인민페 중심 평가 환율은 7.1055위안으로
작년 말 대비 1.2% 상승



스웨덴

-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정책금리 1.75% 동결 발표(2025. 11. 5.)³⁶⁾
 - (경제상황)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였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
 - (정책금리 결정) 2025년 11월 정책금리를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
 - (전망)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 및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
- ◆ 스웨덴 재무부, 2026년 중앙정부 채무관리 지침 발표 (2025. 11. 13.)³⁷⁾
 - (중앙정부 채무 현황 및 전망) 202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이 증가했으며, 2025~2028년 기간에도 GDP 대비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채무관리 지침 변경사항) 2026년 스웨덴 채무관리 지침은 만기 구성 조정, 정량적 평가 중심 전환, 평가 근거·방법의 명확화 등으로 개정
- ◆ 스웨덴 감사원, 코로나19 시기 지자체³⁸⁾ 국고보조금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2025. 11. 25.)³⁹⁾
 - 감사원은 2020~2022년 코로나19 기간에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액하였던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 및 권고사항을 제시
 - 감사원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원 효과가 불명확하고 정부 보고 과정에서 근거 자료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향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액 시 배경, 기준, 결정 요인 등을 명확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고보조금 증액과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며, 다른 보완적 정책 수단도 함께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

36)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oförändrad på 1,75 procent," 2025. 11. 5.,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oforandrad-pa-175-procent/>, 검색일자: 2025. 11. 20.

37) 스웨덴 재무부, "Riktlinjer för statsskuldens förvaltning 2026," 2025. 11. 13., <https://www.regeringen.se/rapporter/2025/11/riktlinjer-for-statsskuldens-forvaltning-2026/>, 검색일자: 2025. 11. 20.

38)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20개의 란스팅(lanstring)과 기초자치단체인 290개의 코뮌(kommun)으로 이루어져 있음

39) 스웨덴 재무부, "Riksrevisionens rapport om generella statsbidrag som stabiliseringspolitiskt instrument," 2025. 11. 25.,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krivelse/2025/11/skr.-20252651>, 검색일자: 2025. 11. 27.

Kipf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12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54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12월 19일 발행 | 제354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12